

종합소득세 신고

[2021/5/20]

공인회계사 최호윤
ngo114@gmail.com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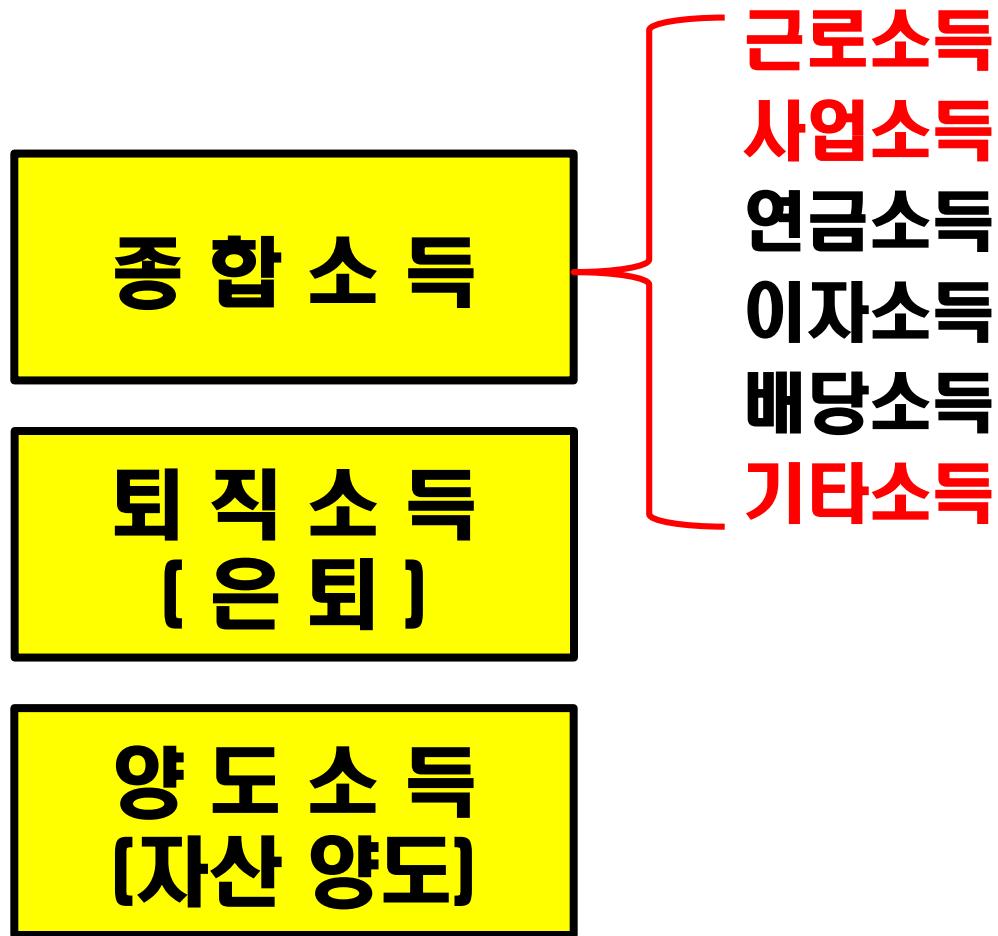
목 차

▪ 종교인 소득세 특징 -----	3
▪ 소득분류체계 (소득세법) -----	4
▪ 종합소득세 신고 일반사항 -----	7
▪ 과세체계 (근로소득 vs 종교인소득) -----	10
▪ 비과세소득 -----	11
▪ 공제대상 부양가족 -----	12
▪ Home Tax 접속 & 정보 조회 -----	13
▪ 근로소득으로 신고하는 경우 -----	21
▪ 기본사항 -----	22
▪ 인적공제 -----	24
▪ 기타 및 특별공제 -----	25
▪ 그 밖의 공제 -----	30
▪ 세액공제 -----	33
▪ 신고서 제출 -----	40
▪ 지방소득세 -----	41
▪ 종교인소득(기타소득)으로 신고하는 경우 -----	46
▪ 기본정보 입력 -----	47
▪ 소득금액 입력 -----	48
▪ 인적공제 -----	50
▪ 자녀세액공제, 기부금공제 -----	52
▪ 복수소득으로 신고하는 경우 -----	59
▪ 소득세액 Home Tax 전자납부 -----	68
▪ 근로장려금과 자녀장려금 -----	70
▪ P-Tax 안내 -----	80
▪ Q & A -----	81

종교인소득세 관련 규정 특징

- 소득 종류(근로/종교인소득)를 **납세자가 선택할 수 있다.**
- 소득지급자인 **교회가 원천징수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다.** ← 교회가 안하는 경우 개인이 종합소득 신고
- 예외적 **반기 납부** (but 승인신청 필요)
- 종교인소득과 종교단체활동비 구분.기록
- 규약/승인 받은 지급기준에 따른 업무활동비 지급액 비과세
- 종교인소득 조사시
 - **종교인소득에 한정하는 규정 명문화**
 - **자기시정 사전 안내절차**

소득분류체계



근로소득 vs 기타소득: 관련 세법 규정

- **근로소득(소법 20조)**
 - **근로를 제공함**으로써 받는 봉급 · 급료 · 보수 · 세비 · 임금 · 상여 · 수당과 이와 유사한 성질의 급여
 - 주주총회 · 사원총회 등 의결기관의 결의에 따라 상여로 받는 소득
 - '법인세법'에 따라 상여로 처분된 금액
 - 퇴직함으로써 받는 소득으로서 퇴직소득에 속하지 아니하는 소득
<='근로자소득'이 아니라 '근로/일/노동으로 인한 소득'이다.
- **기타소득:** 이자소득 · 배당소득 · 사업소득 · 근로소득 · 연금소득 · 퇴직소득 및 양도소득 외의 소득으로서 다음 각 호에서 규정하는 것(소법 21조)
 - (26호) 종교관련종사자가 종교의식을 집행하는 등 종교관련종사자로서의 활동과 관련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종교단체로부터 받은 소득(이하 "종교인소득"이라 한다)
 - ✓ 행정사무원, 시설관리사찰 담당자는 해당 없음.
- 종교인소득에 대하여 근로소득으로 원천징수 또는 과세표준 확정신고를 한 경우 근로소득으로 본다(소법 21조 3항)

소득분류 속성

	특정 조직 소속	독립적 입장
계속반복성	근로소득 (정규직)	사업소득
일시적	근로소득 (일용직)	기타소득

- **신고 대상자**
 - ① 소속 교회에서만 급여를 수령한 경우
 - 교회가 **연말 정산을 안 한 경우**
 - 연말정산시 누락된 정보가 있어 세금 재계산 필요
 - ② 소속 교회 이외 **다른 기관에서 강사비 등을 수령한 경우**
 - ③ **이중직 소득**
- **신고 방식**
 - ① 흠택스 작성 & 전자 접수 or
 - ② 서면 작성 & 방문/우편 접수
- **신고와 납부 기한**
 - 소득세: ~5월 31일
 - 지방소득세: ~5월 31일(소득세 신고시 같이 진행)

● 종교관련종사자 (소득세법 12조 5호 아목)

<= 한국표준직업분류에 따라 구분

종교 관련 종사자 (248)	성직자 (2481)	목사(24811): 목사, 교목, 원목, 군목, 부목사
		신부(24812): (천주교)
		승려(24813): (불교)
		교무(24814): (원불교)
		그외 성직자(24819): 기타 종교 관련
	기타 종교 관련 종사원 (2489)	수녀 및 수사(24891): (천주교)
		전도사 (24892):
		그 외 종교관련 종사원 (24899): 기타종교관련종사자 (선교사)

● 종교단체 (소득세법시행령 41조 15항)

- 민법 32조에 따라 설립된 비영리법인
- 국세기본법 13조에 따른 법인으로 보는 단체
(→ 대부분의 교단 소속 지역교회)
- 부동산등기용 등록번호를 부여 받은 법인 아닌 사단 또는 재단

과세 체계: 근로소득 vs 종교인(기타)소득

과 세 체 계

- 총수입금액 (=수령액 - 비과세소득)
- 필요경비
- 소득금액 (= 수입금액 - 필요경비)

소 득 공 제	인적	기본공제(본인, 배우자, 부양가족)
	공제	추가공제(경로, 장애인 등)
	국민연금 등 공적연금 보험료(전액)	
	특별	건강, 고용보험료 (전액)
	공제	주택자금(300~1,800만원한도)
	조특	신용카드 등, 장기펀드 저축액
	법	창업투자, 개인연금저축

- 과세표준 (= 소득금액 - 소득공제)
- 산출세액 (= 과세표준 * 소득세율)

세 액 공 제	근로소득세액공제 (50만원 ~ 74만원)	
	자녀 (1명:15만원, 2명:30만원, 3명:60만원)	
	연금계좌(12%, 400만원)	
	특별	보험료, 의료비, 교육비
	공제	기부금(법정, 지정, 정치)
	표준세액공제	

- 결정세액 (= 산출세액 - 세액공제)

근로 소득

종교인(기타) 소득

근로소득공제
(2~70%)

필요경비
(20~80%)



(13만원)

(7만원)

비과세 소득 (열거된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만)

근로소득 (소득세법 12조 3호, 령12,령17조의2)	종교인(기타)소득 (소득세법 12조 5호, 령19)
<ul style="list-style-type: none">➤ 월 10만원 이하 식대보조금➤ 월 10만원 이하의 출산/보육 수당➤ 업무관련 본인 학자금 (납입 금액을 한도로 함)➤ 법정'교회 부담분'사회보험료➤ 교회'소유 또는 직접 임차'주택을 무상 사용 (소칙15조의2)➤ 실비 변상적 급여<ul style="list-style-type: none">• 일직, 숙직비, 여비• 자가운전 실 경비 정산액(월 20만원)• 특수한 역무에 종사자가 해당 직장에서만 착용하는 피복• 지급기준에 따라 종교활동을 위하여 사용할 목적으로 지급받은 금품	<ul style="list-style-type: none">➤ 월 10만원 이하 식대보조금➤ 월 10만원 이하의 출산/보육 수당➤ 업무관련 본인 학자금 (납입 금액을 한도로 함)➤ ???➤ 교회'소유 또는 직접 임차'주택을 무상 사용➤ 실비 변상적 급여<ul style="list-style-type: none">• 일직, 숙직비, 여비• 자가운전 실 경비 정산액(월 20만원)• 특수한 역무에 종사자가 해당 직장에서만 착용하는 피복• 지급기준에 따라 종교활동을 위하여 사용할 목적으로 지급받은 금품

(공통)소득금액기준: 연간 소득금액의 합계액이 0원 ~ 100만원 이하
(근로소득만 있는 자는 총급여 500만원이하)
연간 소득금액 합계액에는 퇴직소득금액, 양도소득금액도 포함

- **배우자공제(150만원)**
- **부양가족공제(150만원)**: 거주자(배우자 포함)와 생계를 같이 하는 경우
 - **직계비속, 동거입양자, 위탁아동** : 만 20세 이하(2000.01.01. 이후 출생)
 - **직계존속** : 만 60세 이상(1960.12.31. 이전 출생)
 - 장애인에 해당하는 경우 나이 기준을 적용하지 아니하나 연간 소득금액 합계액이 1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기본공제대상에 해당하지 않음
 - 형제자매의 배우자(제수, 형수 등)는 기본공제대상이 아님
- **경로우대공제(100만원)**: 기본공제대상자로서 만 70세 이상(1950.12.31. 이전 출생) :
(공제연도 중 사망한 경우 사망일 전일 상황에 의해 공제대상 판단)
- **장애인 공제(200만원)** : 소득세법에 따른 장애인
 - ① 장애인 복지법에 의한 장애인
 - ②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한 상이자 및 이와 유사한 자로서 근로능력이 없는 자내지 항시 치료를 요하는 중증환자
- **부녀자공제(50만원)** : 종합소득금액이 3천만원 이하인 여성으로서 다음의 하나에 해당
 - ① 배우자 있는 여성근로자
 - ② 배우자 없는 여성근로자로서 부양가족 있는 세대주
- **한부모공제(100만원)** : 배우자 없으며, 기본공제대상 직계비속 있는 경우(부녀자공제와 중복 적용 배제)

홈택스 접속 (www.hometax.go.kr)

My홈택스

로그인 회원가입 인증센터 | 국세청홈페이지 | 국세상담센터 | 법령정보 | 부서사용자 가입하기 | 화면크기 [- 100% +]

인터넷 납세서비스
HomeTax.국세청홈택스 조회/발급 민원증명 신청/제출 신고/납부 상담/제보 세무대리/납세관리

검색 전체메뉴

☰ 로그인 ▾

국세청 홈택스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① 로그인 안되는 경우 [\[로그인 안내\]](#)를 눌러 도움받으세요. [로그인 안내](#)

공인인증서 or
홈택스 ID등으로 로그인

PC용 보안 프로그램 적용

공동·금융인증서 간편인증(민간인증서) 아이디 로그인 생체인증(얼굴·지문) 비회원 로그인 회원가입 인증서 등록

공동·금융인증서로 로그인하려면 해당 [인증서가](#)
[홈택스에 사전등록되어](#) 있어야 합니다.



공동·금융인증서

[인증서 로그인 안내](#)

홈택스 접속 (www.hometax.go.kr)

● 00: 소득세 신고 메뉴 선택

The screenshot shows the Hometax website interface. At the top, there is a navigation bar with links for '인력 및 납세 서비스' (Hometax), '국세청홈택스', '조회/발급', '민원증명', '신청/제출', '신고/납부', '상담/제보', '검색', '전체메뉴', and '설정'. Below the navigation bar, there is a banner for '2020년 귀속 종합소득세 신고/납부안내' (Announcement for 2020 Income Tax Declaration and Payment). The banner includes information about the declaration period (May 1, 2021 to May 31, 2021, 06:00 ~ 24:00) and payment period (May 31, 2021, 07:00 ~ 23:30). It also mentions the deadline for tax declaration confirmation (June 30, 2021) and the extension due to COVID-19 (August 31, 2021). The banner features an illustration of a person holding a tablet and a speech bubble. To the right of the banner is a calendar for May 2021, showing the date of the announcement (May 25) and the deadline for declaration confirmation (May 25). Below the banner, there is a section for '최후윤님의 세무알리미' (Tax Alert for Mr. Choi Hoo-yun) with a message about filing by May 31. On the left, there is a '자주찾는 메뉴' (Frequently Used Menu) section with various icons and links. On the right, there is a '세금종류별 서비스' (Services by Tax Type) section, which is highlighted with a red arrow pointing to the '종합소득세' (Income Tax) link. This section also lists other services like '근로자녀장려금', '법인세', '양도소득세', '소비세', '원전세', '사업자등록', and '공익법인결산서류공시'.

2020년 귀속 종합소득세 신고/납부안내

신고기간 2021.5.1.(토) ~ 2021.5.31.(월) 06:00 ~ 24:00

납부기한 2021.5.31.(월) 07:00 ~ 23:30

* 성실신고확인서 제출자는 2021.6.30.(수)까지
* 코로나19 피해사업자들은 2021.8.31.(화)까지 납부기한 직권연장

홈택스 국번없이 126번
평일 09:00~18:00(토/일/공휴일 제외)

전자신고 이용문의
국번없이 126(1번~3번)

최후윤님의 세무알리미

귀하는 올해 종합소득세 확정신고 간편장부 - 단순경비를 대상자(E유형)에 해당하오니 5월 31일까지 신고 하시기 바랍니다. 클릭하여 안내문을 확인하세요.

My홈택스
나의 세금정보 확인

자주찾는 메뉴

My 홈택스
개발지역 부동산 틸세신고
근로(자녀)장려금 신청하기
근로(자녀)장려금 신청내역조회
종합소득세 신고
종합소득세 신고도움 서비스
전자신고결과조회
현금영수증 사용내역조회
근로자 소득 세액공제 자료조회
세금포인트 할인쇼핑몰

세금종류별 서비스

종합소득세
세금모의계산
양도소득세
원전세
국세사실증명

근로자녀장려금
법인세
소비세
사업자등록
공익법인결산서류공시

홈택스 접속 (www.hometax.go.kr)

● 00: 소득세 신고 메뉴 선택

≡ 종합소득세

종합소득세

분류소득세에 대비하여 사용되는 용어로서, 개인에게 귀속되는 각종 소득을 종합하여 과세하는 소득세입니다.

개인, 사업자 등 로그인한 사용자 유형별로 보여지는 메뉴가 다를 수 있습니다.

- 신고 이용시간 : 매일 06:00~24:00
- 납부 이용시간 : 매일 07:00~23:30
금융결제원 지로시스템 이용시간과 동일



종합소득세 신고하기

종합소득세 신고도움 서비스

세금 납부하기

신청/제출

- 사업용계좌개설 >
- 기부금영수증발급명세서 >
- 신고부속서류제출 >
- 세금신고 삭제요청 >

전자계산서

민원증명

- 소득금액증명 >
- 표준재무제표증명 >
- 부가가치세 면세사업자 수입금액증명 >
- 납세증명서 >
- 납세사실증명서 >

세금신고납부

- 종합소득세 신고도움서비스 >
- 전자신고결과조회 >
- 서면(방문, 우편등) 접수현황 조회 >
- 사업용계좌신고현황 >
- 납부내역조회 >

세무대리정보

- 나의세무대리수임등의 >
- 나의신고대리수임등의 >
- 나의세무대리인조회 >
- 나의세무대리인해임 >

사업장현황신고

- 사업장현황신고 >
- 사업장현황신고 신고도움서비스 >

기타조회

- 연금, 건강, 고용, 산재보험료조회 >
- 중소기업취업자소득세감면명세서 조회 >

● 00: 소득신고 참고자료 조회

기본사항	신고 시 유의할 사항	신고 참고자료	신고상황 종합분석	주택임대 소득 참고자료
------	-------------	---------	-----------	--------------

④ IV. 종합소득세 신고 참고자료

아래 자료는 2021년 3월말까지 수집된 자료로서 실제 내용과 다를 수 있으므로 실제 소득내용대로 성실하게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2020년 귀속 사업장별 수입금액 현황

사업자 등록번호	상호	수입종류 구분코드	업종 코드	수입 금액	사업 형태	기장 의무	기준경비율		단순경비율		주요 원천 징수의무자
							일반	자가	일반 (기본)	자가 (초과)	
	사업소득지급명세서 …	940600	10 원	단독	간편장부	14.8%	14.8%	58.4%	41.8%	재단법 …	
	사업소득지급명세서 …	940909	10 원	단독	간편장부	17.3%	17.3%	64.1%	49.7%	주식회 …	
	사업소득지급명세서 …	940911	10 원	단독	간편장부	23.5%	23.5%	67.3%	54.2%	(사) …	
총 계			10 원								

◎ 사업소득 외 합산대상 타소득 자료 유무

· 타소득 자료유무를 O, X로 표시함(안내문 기준)

일괄조회

소득종류	이자	배당	근로		연금	기타
			단일	복수		
해당여부	X	X	X	0	X	0

* 종교인기타 소득유무 : (X)

* 2천만원 이하 주택임대수입금액 : 원

홈택스 접속 (www.hometax.go.kr)

● 00: 소득내역 조회

- 지급명세서 보기 컬럼의 '보기'버튼을 눌러 지급액과 원천징수 내역을 확인할 수 있음

The screenshot shows the Hometax website interface. At the top, there's a navigation bar with links for 'HomeTax' (민원별 납세 서비스), '조회/발급' (Query/Issue), '민원증명' (Proof of Taxation), '신청/제출' (Application/Submission), '신고/납부' (Report/繳納), '상담/제보' (Consultation/Report), and search functions ('검색' and '전체메뉴'). Below the navigation is a blue header bar with tabs for '신고' (Report), '납부' (繳納), '고지' (Notice), '환급' (Refund), and '체납' (Arrears). On the left, a sidebar lists categories like '개인' (Individual), '박천상' (Park Chansang), '안녕하세요' (Hello), '나의' (My), '쪽지' (Message), '전자고' (Electronic Report), '민원신' (Complaint), '상담이' (Consultation), '세금포' (Tax Information), '최근접' (Recent), and '최근접' (Recent). The main content area displays a table titled '지급명세서 등 제출내역' (List of submitted documents such as Income Statement). The table has columns for '귀속년도' (Fiscal Year), '지급명세서 종류' (Type of Income Statement), '사업자등록번호' (Business Registration Number), '제출일자' (Submission Date), '정수의무자' (Duty Holder), '지급명세서 보기' (View Income Statement), and '신고방법' (Reporting Method). Two rows for the year 2020 are highlighted with red boxes around the '귀속년도' column. The first row corresponds to the circled '보기' button in the screenshot, which is highlighted with a red circle and the number '1'. The second row corresponds to the second '보기' button. Both rows show '홈택스(전자파일)' (Hometax (electronic file)) as the reporting method.

귀속년도	지급명세서 종류	사업자등록번호	제출일자	정수의무자	지급명세서 보기	신고방법
2020	거주자 기타소…		2021-03-10		보기	홈택스(전자파일)
2020	근로소득지급…		2021-02-04		보기	홈택스(전자파일)
2019	거주자 기타소…		2020-04-16		보기	방문(서면)
2019	근로소득지급…		2020-02-12		보기	홈택스(전자파일)
2018	거주자 기타소…		2019-03-11		보기	홈택스(전자파일)
2018	근로소득지급…		2019-03-05		보기	홈택스(전자파일)
2017	근로소득지급…		2018-03-09		보기	홈택스(전자파일)
2016	근로소득지급…		2017-03-06		보기	홈택스(전자파일)

홈택스 접속 (www.hometax.go.kr)

● 00: 소득신고 참고자료 조회

② 신고시 공제 참고자료

구분	납입액(부담액)	공제 가능액
중간예납세액(기납부세액)	0 원	중간예납세액 전액
소득공제항목	국민연금보험료 	280 원 납부액 전액
개인연금저축	0 원	납입액의 40%와 72만원 중 적은 금액
소기업소상공인공제부금 (노란우산공제)	0 원	납입액과 200만원(사업소득 1억원초과), 300만원(사업소득 1억원이하), 500만원(사업소득 4천만원이하) 중 적은 금액
세액공제항목	퇴직연금세액공제 연금계좌세액공제	0 원 [퇴직연금+연금저축(연 400만원 한도*)] 납입액(연 700만원 한도)의 12%**

홈택스 접속 (www.hometax.go.kr)

● 01: 소득내역 조회

- ① “**공인인증서**”로 홈택스 로그인 후 좌측상단에 있는 ‘My 홈택스’ 버튼을 클릭
- ② ‘연말정산/장려금/학자금’ 버튼을 클릭
- ③ ‘지급명세서 등 제출내역’ 버튼을 클릭

The screenshot shows the 'My HomeTax' service portal interface. A red circle labeled '1' highlights the 'My HomeTax' button in the top left corner. A red circle labeled '2' highlights the '연말정산/장려금/학자금' (Year-end Settlement/Allowance/Aid) button in the top navigation bar. A red circle labeled '3' highlights the '지급명세서 등 제출내역' (Payment Statement/Declaration History) button in the main content area. The main content area displays five empty boxes under the heading '조회된 내역이 없습니다.' (No record found). Below this, a message says '작성 중인 종합소득세 정기확인신고서가 존재합니다. 클릭하여 확인하세요.' (A regular income tax declaration is being written. Click to check it). The right sidebar contains a yellow vertical menu with icons for '로그아웃' (Logout), '자주 찾는 메뉴' (Frequently used menu), '세금종류별 서비스' (Services by tax type), 'My 홈택스' (My HomeTax), '홈택스안내' (HomeTax Information), and '접기' (Close).

종합소득세 신고 유형별 시작 버튼

종합소득세 신고

분류 소득세에 대비하여 사용되는 용어로서
개인에게 귀속되는 각종 소득을 종합하여 과세하는 소득세



작성방법
요약

전자신고 이용방법
(동영상, 매뉴얼)

신고도움
서비스

금융소득

주요 변경사항 및
자주 묻는 질문

- ▶ 단순경비율 추계신고서
[사업소득(연금·기타소득이 함께
있는 경우 포함)]

* 신고 안내유형이 F,G 인 경우

정기신고
작성

기한후신고
작성

수정신고작성

경정청구작성

- ▶ 일반신고서

* 사업소득(기준경비율, 간편장부, 복식부기,
근로소득, 금융소득, 기타소득, 연금소득)
* 신고 안내유형이 F,G,Q,R 이 아닌 경우

3

정기신고
작성

기한후신고
작성

수정신고작성

경정청구작성

파일변환 신고
(회계 프로그램 등)

- ▶ 근로소득자 신고서

* 근로소득만 있는 경우, 종교인근로소득자

1

정기신고
작성

경정청구작성

- ▶ 분리과세 소득자 신고서

* 총수입금액 2천만원 미하 주택임대소득
(▼ 유형만 안내받은 경우)
* 계약금이 위약금·배상금으로 대체되는
기타소득이 있는 경우

정기신고
작성

기한후신고
작성

수정신고작성

경정청구작성

파일변환 신고
(회계 프로그램 등)

- ▶ 종교인소득자 신고서
(종교인소득만 있는 경우)

* 신고 안내유형이 Q,R 인 경우

2

정기신고
작성

기한후신고
작성

수정신고작성

경정청구작성

① 소속 교회 사례비만 있는 경우: **근로소득으로 신고**

② : **종교인(기타)소득으로 신고**

③ 소속 교회 사례비 이외 다른 소득이 있는 경우: **합산 신고**

근로소득으로 신고하는 경우

① 근로소득으로 신고

● 01: 기본사항 확인/등록

- ① '조회' 버튼을 클릭해서 주소지 정보를 확인
- ② 사용자 인증한 경우 '불러오기' 버튼으로 교회가 제공한 내역 불러옴
- ③ '저장 후 다음 이동' 클릭해서 다음화면으로 이동

④ 기본정보 입력

- 신고자의 정보를 입력하는 단계입니다.
- 주민등록번호 옆 확인을 클릭후 '근무지별 소득명세'를 클릭하세요.
- 세대주여부, 내외국인, 거주구분을 입력하여 '저장 후 다음이동'을 클릭하세요.

귀속년도	2020	주민등록번호	<input type="text"/> - <input type="text"/> 1	조회	새로작성하기	신고서 불러오기
2 연말정산 불러오기		※ 회사에서 제출한 연말정산 내역을 불러올 수 있습니다.				
주소						
세대주 여부	<input type="checkbox"/>	내·외국인	<input type="checkbox"/>		내국인	<input type="checkbox"/>
거주구분	<input type="checkbox"/>	거주자	<input type="checkbox"/>	거주지국	KR 대한민국	<input type="checkbox"/> 확인

① 근로소득으로 신고

● 02: 근로소득신고서 입력 (급여정보 등록)

- ① '입력/수정하기'하기 버튼을 눌러 교회에서 수령한 금액 입력할 팝업 생성
- ② 고유번호 입력한 후 확인 버튼을 눌러 교회정보 확인
- ③ 비과세소득을 제외한 급여 금액과 상여 금액, 원천징수세액을 등록

▶ 근무지별 소득명세

※ 종전 근무지의 급여를 합산해야 할 경우 "입력/수정하기"를 클릭하여 근무처별 급여 등 소득을 작성하고 아래 (21)증급여 항목에 급여가 합산되었는지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NO	근무처명	사업자등록번호	급여	상여	인정상여 등	계
조회된 내역이 없습니다.						

▪ 근무처별 소득명세자료 입력

※ 근로소득으로 신고하는 종교인 소득은 하단의 "선택내용구분"을 클릭하여 소득구분 코드를 58로 정정하시기 바랍니다.

소득구분	<input style="width: 100%; height: 25px; border: 1px solid #ccc;" type="text" value="근로소득으로 확정신고한 종교인소득 58"/>		
9. 근무처명	<input style="width: 100%; height: 25px; border: 1px solid #ccc;" type="text" value="교회"/>		
10. 사업자등록번호	2 106 - 82 - 3 확인		
13. 급여	3 36,000,000	14. 상여	3 4,000,000
15. 인정상여	3 0	15-1. 주식매수선택권 행사 이익	3 0
15-2. 우리사주조합 인출금	3 0	15-3. 기타소득계(임원퇴직 소득금액한도초과액 및 직무발명보상금)	3 0
16. 계	3 원천징수영수증상결정세액 소득세		3 0
원천징수영수증상결정세액 농어촌특별세	3 0		3 23

① 근로소득으로 신고

● 02: 근로소득신고서 입력 [인적공제]

- ① '입력/수정하기'하기 버튼을 눌러 가족 인적사항 등록 창(팝업) 생성
- ② 필요 정보 기록하고 '등록하기' 버튼과 '추가입력' 버튼으로 등록

▶ 인적공제 명세

※ 부양가족 등 인적공제 사항을 추가 또는 삭제를 해야 할 경우 "입력/수정하기"를 클릭하시기 바랍니다.

24. 본인		1,500,000	28. 장애인	0 명	0
25. 배우자		0	29. 부녀자	0	0
26. 부양가족		0 명	30. 한부모가족	0	0
27. 경로우대		0 명	소계		1,500,000

1

▪ 인적공제 입력

추가입력

주민등록번호	06 [REDACTED] - [REDACTED] * * * * * * * *	확인	성명	신 [REDACTED]	내국인	내국인
기본공제	<input checked="" type="radio"/> 해당자 <input type="radio"/> 미해당자	관계	직계비속(자녀,입양자)			
인적공제항목	<input type="checkbox"/> 70세 이상 <input type="checkbox"/> 부녀자 <input type="checkbox"/> 한부모가족 <input type="checkbox"/> 장애인					
등록하기						

2

▪ 인적공제 대상자명세

선택내용수정

선택내용삭제

<input type="checkbox"/>	주민등록번호	성명	관계	기본공제	70세이상	장애인	부녀자	한부모	성별 (남:01, 여:02)	나이	외국인
<input type="checkbox"/>	94 [REDACTED] -1*****	김 [REDACTED]	소득자 본인	Y	N	N	N	N	01	26	N

① 근로소득으로 신고

● 02: 근로소득신고서 입력 (기타 및 특별공제)

▶ 기타 및 특별공제 명세

(단위: 원)

구분	금액	구분	금액
31. 국민연금보험료공제 도움말	0	장기주택저당차입 금이자상환액 2011년이전 차입분	차입금 이자상환액 10년~14년 0
32. 공무원연금	0	장기주택저당차입 금이자상환액 2011년이전 차입분	차입금 이자상환액 15년~29년 0
군인연금	0	장기주택저당차입 금이자상환액 2012년이후 차입분 (15년이상)	차입금 이자상환액 30년 이상 0
사립학교교직원연금	0	장기주택저당차입 금이자상환액 2012년이후 차입분 (15년이상)	차입금 이자상환액 고정, 비거치식대출 0
별정우체국연금	0	장기주택저당차입 금이자상환액 2012년이후 차입분 (15년이상)	차입금 이자상환액 기타대출 0
33. 건강보험료(노인장기요양보험료포함) 계산기	0	10년 ~ 14년	고정금리이거나, 비거치상환대출 0
고용보험료	0	15년 이상	고정금리이면서, 비거치상환대출 0
34. 주택임차차입금 원리금 상환액 대출기관 계산하기	0	고정금리이거나, 비거치상환대출 0	그 밖의 대출 0
34. 주택임차차입금 원리금 상환액 거주자	0	35. 기부금(이월분)	0
		36. 특별소득공제 계(33+ ~+ 35)	0
		37. 차감소득금액	27,250,000

① 근로소득으로 신고

● 02: 근로소득신고서 입력 (기타 및 특별공제)

- ① 직접 입력하거나
- ② 계산기 버튼으로 별도 입력창에서 '공제할 금액' 입력하고, '공제한도' 계산해서 공제액을 신고서에 반영

▶ 기타 및 특별공제 명세

(단위: 원)

구분	금액	구분	금액
31. 국민연금보험료공제	0	장기주택저당차입 금이자상환액 2011년이전 차입분	차입금 이자상환액 10년~14년 0
32. 공무원연금	0		차입금 이자상환액 15년~29년 0
군인연금	0		차입금 이자상환액 30년 이상 0
사립학교교직원연금	0	장기주택저당차입 금이자상환액 2012년이후 차입분 (15년이상)	차입금 이자상환액 고정,비거치식대출 0
별정우체국연금	0		차입금 이자상환액 기타대출 0
33. 건강보험료(노인장기요양보험료포함)	0	장기주택 저당차입 금이자상 환액 2015년 이후 차입분	10년 ~ 14년 고정금리이거나, 비거치상환대출 0
계산기			15년 이상 고정금리이면서, 비거치상환대출 0
고용보험료	0		고정금리이거나, 비거치상환대출 0
34. 주택임차차입금 원리금 상환액 대출기관	0		그 밖의 대출 0
계산하기		35. 기부금(이월분)	0
34. 주택임차차입금 원리금 상환액 거주자	0	36. 특별소득공제 계(33+ ~+ 35)	0
		37. 차감소득금액	27,250,000

① 근로소득으로 신고

● 02: 근로소득신고서 입력 (기타 및 특별공제-국민연금)

- ① 본인 부담분 국민연금 불입액을 기록. (조회정보 참고)
(주의: **교단연금 불입액은 해당 안됨**)

▶ 기타 및 특별공제 명세

(단위: 원)

구분	금액	구분	금액
31. 국민연금보험료공제	0	차입금 이자상환액 10년~14년	0
도움말	1	장기주택저당차입 금이자상환액 2011년이전 차입분	0
32. 공무원연금	0	차입금 이자상환액 15년~29년	0
군인연금	0	차입금 이자상환액 30년 이상	0
사립학교교직원연금	0	장기주택저당차입 금이자상환액 2012년이후 차입분 (15년이상)	0
별정우체국연금	0	차입금 이자상환액 고정,비거치식대출	0
33. 건강보험료(노인장기요양보험료포함)	0	차입금 이자상환액 기타대출	0
계산기			
고용보험료	0		
34. 주택임차차입금 원리금 상환액 대출기관	0	10년 ~ 14년	0
계산하기		장기주택 저당차입 금이자상 환액	0
34. 주택임차차입금 원리금 상환액 거주자	0	2015년 이후 차입분	0
		15년 이상	0
		그 밖의 대출	0
		35. 기부금(이월분)	0
		36. 특별소득공제 계(33+ ~+ 35)	0
		37. 차감소득금액	27,250,000

① 근로소득으로 신고

● 02: 근로소득신고서 입력 (기타 및 특별공제-건강보험료)

- ① 건강보험료 연간 납입금액 불러오기
- ② 계산하기 버튼을 눌러 공제대상 금액을 계산
- ③ 적용하기 버튼을 눌러 신고서에 반영

* 귀속년도	2020	▼	전체선택	선택해제	1 <input checked="" type="checkbox"/> 1월 <input checked="" type="checkbox"/> 2월 <input checked="" type="checkbox"/> 3월 <input checked="" type="checkbox"/> 4월 <input checked="" type="checkbox"/> 5월 <input checked="" type="checkbox"/> 6월 <input checked="" type="checkbox"/> 7월 <input checked="" type="checkbox"/> 8월 <input checked="" type="checkbox"/> 9월 <input checked="" type="checkbox"/> 10월 <input checked="" type="checkbox"/> 11월 <input checked="" type="checkbox"/> 12월	1 불러오기
--------	------	---	------	------	--	---

(단위: 원)

구분	지출금액
① 건강보험료 등 납입금액	388,590
② 고용보험료 납입금액 (직접 입력)	0
③ 소계(① + ②)	388,590
공제대상금액	388,590
세액공제액	388,590

2 3

닫기
계산하기
적용하기

① 근로소득으로 신고

● 02: 근로소득신고서 입력 (기타 및 특별공제-주택임차차입금)

- ① 주택자금공제대상 금액 불러오기
- ② 주택관련 차입금 원리금 상환 내역을 등록
- ③ 계산하기, 적용하기 버튼을 눌러 공제금액 계산 후 신고서 반영

* 귀속년도	2020	▼	전체선택	선택해제	1	<input checked="" type="checkbox"/> 1월	<input checked="" type="checkbox"/> 2월	<input checked="" type="checkbox"/> 3월	<input checked="" type="checkbox"/> 4월	<input checked="" type="checkbox"/> 5월	<input checked="" type="checkbox"/> 6월	<input checked="" type="checkbox"/> 7월	<input checked="" type="checkbox"/> 8월	<input checked="" type="checkbox"/> 9월	<input checked="" type="checkbox"/> 10월	<input checked="" type="checkbox"/> 11월	<input checked="" type="checkbox"/> 12월	2	불러오기
▪ 특별소득공제(주택임차금) (단위 : 원)																			
구분	대상금액		공제금액																
주택임차 차입금 원리금상환액 대출기관	0		0																
주택임차 차입금 원리금상환액 거주자 (직접 입력)	0		0																
소계	0		0																
▪ 특별소득공제(장기주택저당차입금이자상환액) (단위 : 원)																			
항목	대상금액		공제금액																
2011년 이전차입분	10년~14년 (600만원한도)	0		0															
	15~29년 (1,000만원한도)	0		0															
	30년 이상 (1,500만원한도)	0		0															
2012년 이후차입분	고정금리이거나, 비거치상환대출 (1,500만원한도)	0		0															
	기타대출 (500만원한도)	0		0															
2015년 이후차입분	15년 이상	고정금리이면서, 비거치상환대출 (1,800만원 한도)	0		0														
		고정금리이거나, 비거치상환대출 (1,500만원 한도)	0		0														
		그밖의 대출 (500만원 한도)	0		0														
	10년~15년	고정금리이거나, 비거치상환대출 (300만원 한도)	0		0														
	소계	0		0															
3	4	닫기		계산하기	적용하기														

① 근로소득으로 신고

● 02: 근로소득신고서 입력 (그 밖의 공제-연금저축,주택마련저축)

▶ 그 밖의 소득공제

(단위: 원)

구분	금액	구분	금액
38. 개인연금저축(2000.12.31. 이전 가입)	0	42. 신용카드 등 사용액	계산기 0
39. 소기업소상공인 공제부금	0	43. 우리사주조합 출연금	도움말 0
40. 주택마련저축	0	우리사주조합 기부금 (‘14’년 귀속까지 해당)	0
청약저축	0	44. 고용유지 중소기업 근로자	도움말 0
주택청약종합저축	0	45. 장기집합투자증권저축	도움말 0
근로자주택마련저축	0	46. 그 밖의 소득공제 계	0
41. 투자조합출자 등	0		

계산기 도움말

계산기 도움말

(단위: 원) 계산하기

구분	가입일자	납입금액	공제금액
청약저축	<input type="radio"/> 2015.1.1.이후 가입 <input type="radio"/> 2014.12.31.이전 가입	0	0
주택청약종합저축	<input type="radio"/> 2015.1.1.이후 가입 <input type="radio"/> 2014.12.31.이전 가입	0	0
근로자주택마련저축		0	0
합계		0	0

닫기

적용하기

① 근로소득으로 신고

● 02: 근로소득신고서 입력 (그 밖의 문제-신용카드 사용액)

▶ 그 밖의 소득공제

(단위: 원)

구분	금액	구분	금액
38. 개인연금저축(2000.12.31. 이전 가입)	0	42. 신용카드 등 사용 계산기	0
39. 소기업소상공인 공제부금	0	43. 우리사주조합 출연금 도움말	0
40. 주택마련저축 계산기 도움말	480,000	우리사주조합 기부금 (‘14년 귀속까지 해당)	0
청약저축	480,000	44. 고용유지 중소기업 근로자 도움말	0
주택청약종합저축	0	45. 장기집합투자증권저축 도움말	0
근로자주택마련저축	0	46. 그 밖의 소득공제 계	480,000
41. 투자조합출자 등 계산기 도움말	0		

1

연금
부금
해당
업무
권자총
세계

* 귀속년도	2020	▼	전체선택	선택해제	(2)	<input checked="" type="checkbox"/> 1월	<input checked="" type="checkbox"/> 2월	<input checked="" type="checkbox"/> 3월	<input checked="" type="checkbox"/> 4월	<input checked="" type="checkbox"/> 5월	<input checked="" type="checkbox"/> 6월	(3)
						<input checked="" type="checkbox"/> 7월	<input checked="" type="checkbox"/> 8월	<input checked="" type="checkbox"/> 9월	<input checked="" type="checkbox"/> 10월	<input checked="" type="checkbox"/> 11월	<input checked="" type="checkbox"/> 12월	
총 금여액	3월 사용액			4~7월 사용액			그 외 사용액					
신용카드 등 사용액 합계	758,240			3,662,605			40,000,000					
① 전통시장 사용액	11,000			48,000			22,000					
② 대중교통 이용액	79,200			276,600			266,650					
③ 현금영수증, 직불·선불카드 사용액(전통시장, 대중교통 제외)	668,040			3,338,005			5,439,360					
④ 신용카드 사용액(전통시장, 대중교통 제외)	0			0			300					
⑤ 도서·공연·박물관·미술관 사용분	합계	0			0			42,200				
	신용카드 도서·공연·박물관·미술관	0			0			0				
	현금영수증, 직불카드·선불카드 도서·공연·박물관·미술관	0			0			42,200				
신용카드 등 소득공제금액										153,084		

① 근로소득으로 신고

● 02: 근로소득신고서 입력 (산출세액)

- ① 입력한 내용에 따라 과세표준과 산출세액 자동 계산 됨

▶ 과세표준 및 산출세액

(단위: 원)

구분	금액
47. 소득공제 종합한도 초과액	0
48. 종합소득 과세표준	① 25,208,326
49. 산출세액	① 2,701,248

▶ 세액감면

도움말

(단위: 원)

구분	금액	구분	금액
50. 소득세법상 세액감면(제59조의 5)	0	53. 조세조약(원어민교사 등)	0
51. 조세특례제한법상 세액감면(제18조 외)	0	54. 세액감면 계	0
52. 조세특례제한법상 세액감면(제30조)	0		

① 근로소득으로 신고

● 02: 근로소득신고서 입력 (세액공제)

① 항목별로 직접 입력하거나 '계산기' 버튼을 눌러 등록

▶ 세액공제

(단위: 원)

※ 전자신고세액공제 「소득세법」 제73조에 따라 과세표준확정신고의 예외에 해당하는 자가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한 경우에는 추가로 납부하거나 환급 받은 결정세액과 1만원 중 적은 금액을 공제합니다.

구분	공제대상금액	금액	구분	공제대상금액	금액
55. 근로소득		684,000	63. 기부금		0
56. 공제대상자녀	<input type="checkbox"/> 도움말	1 명	150,000	<input type="checkbox"/> 기부금조정명세서	
출산·입양자	<input type="checkbox"/> 첫째 <input type="checkbox"/> 둘째 <input type="checkbox"/> 셋째이상	0 0 명	0	63-1. 정치자금 기부금 (10만원이하)	0 0
출산·입양자	<input type="checkbox"/> 0 명	0	63-2. 정치자금 기부금 (10만원초과)	0 0	
연금계좌	<input type="checkbox"/> 계산기	0	63-3. 소득세법 제34조제2항 제1호의 기부금	0 0	
57. 과학기술인공제		0	63-4. 우리사주조합기부금	0 0	
58. 「근로자퇴직급여보장 법」에 따른 퇴직연금		0	63-5. 소득세법 제34조제3항 제1호의 기부금	0 0	
59. 연금저축		0	64. 특별세액공제 계(60+ ~ + 63)	0 0	
60. 보장성보험료	<input type="checkbox"/> 계산기	0	65. 표준세액공제	<input type="checkbox"/> 도움말	0
일반 보장성		0	66. 납세조합공제		0
장애인 전용 보장성		0	67. 주택차입금	<input type="checkbox"/> 도움말	0
61. 의료비	<input type="checkbox"/> 계산기	0	68. 외국납부	<input type="checkbox"/> 도움말	0
62. 교육비	<input type="checkbox"/> 계산기	0	69. 월세액 세액공제	<input type="checkbox"/> 도움말	0
			전자신고세액공제		10,000
			70. 세액공제 계		844,000

① 근로소득으로 신고

● 02: 근로소득신고서 입력 (세액공제-자녀)

- ① 자녀세액공제와 자녀장려금은 **중복수혜 불가** (←선택사항임)
- ② 만 7세~20세 (01.01.01~13.12.31 출생자) 및 2020년 출산(입양)자녀대상

구분	공제대상금액	금액	구분	공제대상금액	금액
55. 근로소득		684,000	63. 기부금		0
56. 공제대상자녀 도움말	<input type="checkbox"/> 1 명 <input type="checkbox"/> 첫째 <input type="checkbox"/> 둘째 <input type="checkbox"/> 셋째이상	150,000	기부금조정명세서		
출산·입양자		0	63-1. 정치자금 기부금 (10만원이하)	0	0
			63-2. 정치자금 기부금 (10만원초과)	0	0
			63-3. 소득세법 제34조제2항 제1호의 기부금	0	0
출산·입양자	<input type="checkbox"/> 0 명	0	63-4. 우리사주조합기부금	0	0

자녀세액공제 [소법 제59조의 2]	자녀장려금 [조특법 제100조의 27]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요건 : 아래 중 1가지에 해당 <ul style="list-style-type: none"> ① 만 7세~20세 자녀 부양 ② 2020년 출산 · 입양 ➤ 공제액 : <ul style="list-style-type: none"> ① 1인당 15~30만원 ② 출산(입양) : 30~70만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요건 : 아래 3가지 요건 모두 충족 <ul style="list-style-type: none"> ① 만 18세 미만 자녀 부양 ② 부부합산소득 4,000만원 미만 ③ 가구원 전원 재산 합계 2억 미만 ➤ 지급액 : 1인당 50~70만원 지급

① 근로소득으로 신고

● 02: 근로소득신고서 입력 (세액공제-보장성보험료)

- ① '불러오기' 버튼을 활용하거나 아니면 보험 납입액을 직접 등록
- ② 계산하기와 적용하기 버튼으로 계산후 신고서 반영 함

60. 보장성보험료 계산기

① 

기록년도		2020	전체 선택	선택해제	1월	2월	3월	4월	5월	6월	7월	8월	9월	10월	11월	12월	불러오기	
<input type="checkbox"/>	성명(계약자)	주민등록번호	관계	납입금액														
															일반보장성 보험	장애인 전용 보장성보험		
															(단위: 원)			
구분		납입금액																
① 일반 보장성보험		① 1,200,000																
② 장애인 전용 보장성보험		② 0																
③ 소계 (① + ②)		③ 1,200,000																
공제대상금액		0																
세액공제액		0																
닫기		계산하기		적용하기														

② 

③ 

① 근로소득으로 신고

● 02: 근로소득신고서 입력 (세액공제-의료비)

61. 의료비 계산기
62. 교육비 계산기

1

* 귀속년도 2020		전체선택	선택해제	1월	2월	3월	4월	5월	6월	7월	8월	9월	10월	11월	12월	불러오기		
<input type="checkbox"/>	성명	주민등록번호	관계	지출금액														
(단위:원)																		
구분		지출금액																
① 총 급여	40,000,000																	
② 본인, 65세이상자, 장애인	2,500,000																	
③ 난임시술비	0																	
④ 그 밖의 공제대상자 의료비	0																	
⑤ 소계(② + ③ + ④)	2,500,000																	
공제대상금액	1,300,000																	
세액공제액	195,000																	
<button>닫기</button> <button>계산하기</button> <button>적용하기</button>																		

① 근로소득으로 신고

● 02: 근로소득신고서 입력 (세액공제-교육비)

61. 의료비 계산기		62. 교육비 계산기												도움말 펼치기			
		* 귀속년도 2020 <input type="button" value="▼"/> 전체선택 선택해제 <input type="checkbox"/> 1월 <input type="checkbox"/> 2월 <input type="checkbox"/> 3월 <input type="checkbox"/> 4월 <input type="checkbox"/> 5월 <input type="checkbox"/> 6월 <input type="checkbox"/> 7월 <input type="checkbox"/> 8월 <input type="checkbox"/> 9월 <input type="checkbox"/> 10월 <input type="checkbox"/> 11월 <input type="checkbox"/> 12월 <input type="button" value="불러오기"/>															
		<input type="checkbox"/> 성명	주민등록번호	관계	공제종류구분	교육비	교복구입비	체험학습비									
														<input type="button" value="교육비 불러오기"/>	<input type="button" value="가족입력 추가"/>	<input type="button" value="가족입력 삭제"/>	
														(단위:원)			
구분					지출금액												
소득자 본인					<input type="text" value="0"/>												
장애인 특수교육비					<input type="text" value="0"/>												
가족 1	<input type="button" value="취학전 아동"/>				<input type="text" value="0"/>												
가족 2	<input type="button" value="취학전 아동"/>				<input type="text" value="0"/>												
소득자본인 공제대상금액					<input type="text" value="0"/>												
장애인 특수교육비 공제대상금액					<input type="text" value="0"/>												
취학전 아동 공제대상금액					<input type="text" value="0"/>												
초중고 공제대상금액					<input type="text" value="0"/>												
대학생 공제대상금액					<input type="text" value="0"/>												
공제대상금액					<input type="text" value="0"/>												
세액공제액					<input type="text" value="0"/>												
												<input type="button" value="닫기"/>	<input type="button" value="계산하기"/>	<input type="button" value="적용하기"/>			

① 근로소득으로 신고

● 02: 근로소득신고서 입력[세액공제-기부금]

63. 기부금

기부금조정명세서

① 공제대상 기부금액을 등록

② 하단의 공제한도금액내용으로 공제금액과 이월금액 각각 등록

· 기부금 조정명세 내역

* 기부유형	종교단체지정기부금 <input checked="" type="checkbox"/>	* 기부연도	2020
13. 기부금 합계금액	9,000,000	* 14. 공제대상 기부금액	1 9,000,000
15. 기부장려금 신청금액	0	16. 기타 기부금	0
* 17. 전년까지 공제된 금액	0		
18. 공제대상금액(14-17)	9,000,000	* 해당연도 필요경비	0
* 해당연도 소득공제	0	2 해당연도 세액공제 대상금액	3 2,875,000
* 해당연도에 공제받지 못한 소멸금액	0	* 해당연도에 공제받지 못한 이월금액	4 6,125,000

2

등록하기

취소하기

5

구분	기부금 한도액		공제대상금액		
	필요경비	소득·세액 공제	필요경비	소득공제	세액공제
정치자금 10만원 이하	0	28,750,000			0
정치자금 10만원 초과			0		0
법정기부금(이월)	0	28,750,000		0	0
법정기부금(당해)			0		0
우리사주조합 기부금	0	8,625,000	0	0	0
종교단체 외 지정기부금 (이월)			0	0	0
종교단체 외 지정기부금 (당해)			0		1,000,000
종교단체 지 정기부금(이 월)	0	3,875,000	0	0	0
종교단체 지 정기부금(당 해)			0		2,875,000

닫기

입력완료

① 근로소득으로 신고

● 02: 근로소득신고서 입력 (세액공제)

② 세액공제

※ 전자신고세액공제 : 「소득세법」 제73조에 따라 과세표준화정신고의 예외에 해당하는 자가 과세표준화정신고를 한 경우에는 추가로 납부하거나 환급받은 결정세액과 1만원 중 적은 금액을 공제합니다.

구분	공제대상금액	금액	구분	공제대상금액	금액
55. 근로소득		684,000	63. 기부금		581,250
56. 공제대상자녀	도움말	0 명	기부금조정명세서		
			63-1. 정치자금 기부금 (10만원이하)	0	0
출산·입양자		0	63-2. 정치자금 기부금 (10만원초과)	0	0
			63-3. 법정기부금	0	0
연금계좌	계산기	0	63-4. 우리사주조합기부금	0	0
57. 과학기술인공제		0	63-5. 지정기부금	3,875,000	581,250
58.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에 따른 퇴직연금		0	64. 특별세액공제 계(60+ ~ + 63)	8,175,000	1,226,250
59. 연금저축		0	65. 표준세액공제	도움말	0
60. 보장성보험료	계산기	0	66. 납세조합공제		0
일반 보장성		0	67. 주택차입금	도움말	0
장애인 전용 보장성		0	68. 외국납부	도움말	0
61. 의료비	계산기	1,300,000	69. 월세액 세액공제	도움말	0
62. 교육비	계산기	3,000,000	전자신고세액공제		10,000
			70. 세액공제 계		1,920,250

표준세액공제 :
보험료, 의료비, 교육비,
기부금, 월세 공제를 받지
않은 경우 13만원을
공제함

월세세액공제 :
총급여 7천만원 이하이고
국민주택규모(전용
면적 85 m²이하) 임차한
경우 월세

① 근로소득으로 신고

● 02: 근로소득신고서 입력 (작성 완료)

- ① 결정세액과 납부세액 등 확인한 후
- ② 신고서 작성완료 버튼을 눌러 신고서 제출화면으로 이동

③ 납부(환급)세액

※ 아래의 '72. 원천징수영수증상의 결정세액'은 당해화면 상단 근무지별 소득명세 오른쪽 [입력/수정하기] 클릭후 '원천징수영수증상결정세액소득세' 항목에서 입력합니다.

※ 개인지방소득세는 지방자치단체에 별도 신고해야합니다.

(홀택스에서 소득세 신고 종료후 클릭 한번으로 간편하게 신고)

구분	소득세	농어촌특별세
71. 결정세액(49-54-70)	1,110,998	0
72. 원천징수영수증상의 결정세액	0	0
73. 차감납부할 세액(71-72)	1,110,998	0
74. 납부특례세액차감	0	
납부특례세액가산	0	
75. 분납할세액(2개월 이내)	0	0
76. 신고기한내 납부세액	1,110,998	0

신고인은 「소득세법」 제70조, 「농어촌특별세법」 제7조 및 「국세기본법」 제45조의3에 따라 위의 내용을 신고하며,
 위 내용을 충분히 검토하였고 신고인이 알고 있는 사실 그대로를 정확하게 적었음을 확인합니다.
 위 내용 중 과세표준 또는 납부세액을 신고하여야 할 금액보다 적게 신고하거나 환급세액을 신고하여야 할 금액보다 많이 신고한 경우에는
 국세기본법 제47조의3에 따른 가산세 부과 등의 대상이 됨을 알고 있습니다.

이에 동의하며 신고서를 제출합니다.

이전

신고서 작성완료

① 근로소득으로 신고

● 03: 지방소득세 신고

- ① [Step 2.] 신고내역 클릭
- ② 지방소득세 [신고이동] 클릭

종합소득세

1

Step 1. 세금신고 Step 2. 신고내역 Step 3. 삭제내역

- '사업자등록번호/주민등록번호'를 입력하면 **최대 1년치**의 신고 내역을 조회할 수 있습니다.
- 조회된 목록에서 [접수번호], [접수여부(첨부서류)]를 각각 선택하면 신고서원장, 제출서식목록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 [부속서류제출]에서 PDF 형태로 신고 관련 부속서류를 제출한 경우에는 [부속서류제출여부]에서 'Y'로 보여집니다.
- [부속서류제출여부]의 (Y/N)을 클릭하여 부속서류 제출내역을 확인하거나 추가 제출할 수 있습니다.
- 신고서 제출 후 납부할 세액이 있는 경우 [납부할 세액 조회납부]를 통해 반드시 신고기한 23시 30분 까지 납부하시기 바랍니다.
- 자세한 납부방법을 확인하시려면 [납부방법 확인]을 클릭하시기 바랍니다.
- 2020년 1월 1일부터는 개인지방소득세는 지방자치단체에 신고해야합니다.
- 개인지방소득세 신고를 위해 아래의 조회하기 → 「지방소득세 신고하기」 버튼을 클릭하세요(간편히 신고 가능)
- 개인지방소득세 경정청구는 지방자치단체에 직접 해야 하나 국세가 경정되는 경우 지방소득세는 별도의 청구가 없어도 환급이 가능합니다.

● 신고서 제출목록

* 신고일자	2021-04-18	<input type="button" value=""/>	~	2021-05-18	<input type="button" value=""/>	사업자등록번호/주민등록번호	<input type="text"/>
* 정보 공개여부	<input checked="" type="radio"/> 여	<input type="radio"/> 부	※ 정보 공개 대상 : ① 신고내역의 상호(성명) 항목 ② 접수증의 상호(성명), 사업자번호, 사용자 ID, 사용자명 항목				

조회하기

총 1건의 신고내역이 있습니다.

										개별납부서 일괄 출력	접수증 일괄조회 및 인쇄	개별접수증 일괄 출력	10건	확인		
□	과세연월	신고서 종류	신고구분	신고유형	상호 (성명)	사업자(주민) 등록번호	접수방법	접수일시	접수번호 (신고서보>(첨부서류))	접수여부	접수증	납부서	제출자 부속서류 ID	부제출여부	지방 소득세	
<input type="checkbox"/>	2020…	종합…	정…	정…	박 [REDACTED]	[REDACTED]	[REDACTED]	인…	2021…	109…	정상(7…)	<input type="button" value="보기"/>	<input type="button" value="보기"/>	q…	N	<input type="button" value="신고이동"/>

2

① 근로소득으로 신고

● 03: 지방소득세 신고

w@tax

개인지방소득세(종합소득분)

! 유의사항

- 납세자 인적사항의 개인구분은 개인, 외국인, 문중, 종종, 기타단체로만 입력하셔야 합니다.



• 는 필수 입력항목입니다.

납세자 인적사항



개인구분 •	개인(내국인)	성명 •	비 [REDACTED]
주민번호 •	83 [REDACTED] - [REDACTED] [REDACTED]	전자우편주소	전자우편주소를 입력하세요.
사업자번호	- 없이 숫자 10자리를 입력하세요.	상호	상호를 입력하세요.
전화번호	- 없이 입력하세요.	휴대폰번호 •	010-[REDACTED]
현주소	서울특별[REDACTED]		

① 근로소득으로 신고

● 03: 지방소득세 신고

기본사항

신고구분 *	<input checked="" type="radio"/> 정기신고 <input type="radio"/> 수정신고 <input type="radio"/> 경정청구 <input type="radio"/> 기한후신고		
귀속연도 *	2020	신고기한	2021-05-31
납부기한 *	2021-05-31	신고일자	2021-05-18
신고유형 *	<input type="radio"/> 자기조정 <input type="radio"/> 외부조정 <input type="radio"/> 성실신고확인 <input type="radio"/> 간편장부 <input type="radio"/> 추계-기준율 <input type="radio"/> 추계-단순율 <input type="radio"/> 분리과세 <input checked="" type="radio"/> 비사업자		
기정의무 *	<input type="radio"/> 해당없음 <input type="radio"/> 복식부기의무자 <input type="radio"/> 간편장부대상자 <input checked="" type="radio"/> 비사업자		
거주/비거주 *	<input checked="" type="radio"/> 거주자 <input type="radio"/> 비거주자	거주지국코드 *	KR
외국인단일세율적용 *	<input type="radio"/> 여 <input checked="" type="radio"/> 부	분리과세여부 *	<input type="radio"/> 여 <input checked="" type="radio"/> 부
결손금소급공제환급신청	<input type="radio"/> 여 <input checked="" type="radio"/> 부		

납세지

주소 *	[Redacted]			
관할자치단체 *	서울특별시	[Redacted]	[Redacted]	[Redacted]

② 도움말

- 과세기간 종료일 기준 주소지 관할자 치단체입니다.
- (과세기간 종료일 : 일반적인 경우 12 월31일, 해외 이주한 경우 출국일, 사망한 경우 사망일)
- 납세지를 잘못 신고해도 신고효력에는 영향이 없습니다.

① 근로소득으로 신고

● 03: 지방소득세 신고

신고세액				
17. 과세표준 •	3,184,884 원	21. 세액공제	53,797 원	
18. 세율	0.6 %	22. 종합과세 (19-20-21)	0 원	
19. 산출세액	19,109 원	결정 세액	23. 분리과세소득 결정세액 합계	0 원
20. 세액감면	0 원		24. 합계 (22+23)	0 원
가산세 구분	선택	26. 납부지연일수/납부지연가산세 ?	0 일 0 원	
부정신고사유	선택	무기장 가산세 (a)	0 원	
일반무(과소)신고 ?	0 원	성실신고확인서 미제출 (b)	0 원	
부정무(과소)신고 ?	0 원	그외가산세 (c)	0 원	
25. 무(과소)신고가산세합계	0 원	27. 기타 가산세 합계 (a+b+c) ?	0 원	
		28. 가산세합계(25+26+27)	0 원	
29. 추가납부세액	0 원	기납부세액 수시부과등 (f)	0 원	
30. 합계 (24+28+29)	0 원	기납부세액 토지등매매차익 (g)	0 원	
기납부세액 특별징수 (e)	0 원	31. 기납부세액 (e+f+g)	0 원	
		32. 납부(환급) 할 총 세액 (30-31)	0 원	

① 근로소득으로 신고

● 03: 지방소득세 신고

환급계좌

환급은행	선택	▼	환급계좌	숫자만입력하세요
------	----	---	------	----------

동의 여부

신고인은 「지방세법」 제95조에 따라 위의 내용을 신고하며, 위 내용을 충분히 검토했고 신고인이 사실 그대로를 정확하게 적었음을 확인합니다.

위 내용 중 과세표준 또는 납부세액을 신고해야 할 금액보다 적게 신고하거나 환급세액을 신고해야 할 금액보다 많이 신고한 경우에는 「지방세기본법」 제54조 및 제55조에 따른 가산세 부과 등의 대상이 됨을 알고 있습니다.

이에 동의하며 신고서를 제출합니다.

신고

종교인(기타)소득으로 신고하는 경우

② 종교인(기타)소득으로 신고

● 01: 기본사항 확인/등록

- ① '조회' 버튼을 클릭해서 주소지 정보를 확인
- ② 전자메일, 주소지 전화, 휴대전화번호를 기재
(주소지 전화번호 또는 휴대폰 번호중 하나는 필수값으로 입력)
- ③ '저장 후 다음 이동' 클릭해서 다음화면으로 이동

➊ 기본정보 입력

* 당해 신고서는 신고안내유형이 Q, R이거나 종교인소득만 있는 경우로서 종교인소득(기타소득)으로 신고하는 경우만 작성 가능하오니 그 외의 경우는 일반신고서 등 다른 유형의 신고서를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➋ 기본사항

귀속년도	2020	주민등록번호	9 [REDACTED] - [REDACTED] [REDACTED]	조회	김****
주소	도로명 주소 : 서울특별시 서대***** 지번 주소 : 서울특별시 서대*****				
전자메일	[REDACTED] @ [REDACTED]	직접입력			
주소지 전화	[REDACTED] - [REDACTED] - [REDACTED]	휴대 전화	010	- [REDACTED] - [REDACTED]	
거주구분	거주자	내·외국인	내국인	거주지국	KR 대한민국 선택
모두채움 적용여부	<input checked="" type="radio"/> 여 <input type="radio"/> 부				



새로작성하기

신고서 불러오기

저장 후 다음이동

② 종교인(기타)소득으로 신고

● 02: 종교인소득세 신고서 입력

- ① '종교인소득명세 입력' 버튼을 클릭해서 '교회정보'와 '수령한 금액'을 입력하는 입력창 생성

▶ 종교인소득명세

종교인소득명세 도움말

종교인소득명세 입력/수정하기

NO	종교단체명	사업자등록번호	수입금액	원천징수세액
조회된 내역이 없습니다.				



② 종교인(기타)소득으로 신고

● 02: 종교인소득세 신고서 입력 [소득자료 등록]

- ① 불러오기 버튼으로 교회가 제출한 내역을 불러 오거나
- ② 교회 고유번호, 수령한 수입금액, 원천징수 세액을 직접 입력하여 등록
 - 고유번호 입력하고 '확인' 버튼으로 교회 명칭 확인
 - **수입금액은 비과세소득을 제외한 수령액**을 의미
 - 등록하기 버튼을 눌러 수입금액을 등록 & 하단의 적용하기 버튼 클릭하여 다음화면으로 이동

종교인소득명세

제출했던 지급명세서가 있는 경우,
클릭하여 불러오기

1

연말정산/기타소득명세 불러오기 초기화

종교인소득명세자료 입력

종교단체명

교회

사업자등록번호(고유번호)

106 - 82 - 6

확인

수입금액

12,000,000

원천징수세액

0

2

제출했던 지급명세서가 없는 경우,
직접 입력하기

등록하기

선택내용 수정 선택내용 삭제

<input type="checkbox"/>	일련번호	종교단체명	사업자등록번호 (고유번호)	수입금액	원천징수세액
<input type="checkbox"/>	1	교회	106-82-6	12,000,000	0

(76) 총수입금액

12,000,000

(77) 필요경비

9,600,000

(78) 소득금액

2,400,000

닫기

적용하기

② 종교인(기타)소득으로 신고

● 02: 종교인소득세 신고서 입력 [인적공제]

- ① 인적공제대상자 명세 입력/수정하기
 - ② 인적공제 대상자명세 추가

› 인적공제대상자 명세

인적공제명세 도움말 1 인적공제대상자 명세 입력/수정하기

관계명	성명	내외국인코드	주민등록번호
소득자 본인	김***	1	9[REDACTED]*****

2 인적공제 대상자명세 추가 선택내용삭제

<input type="checkbox"/>	주민등록번호	성명	관계	기본공제	70세이상	장애인	부녀자	한부모	내외국인여부
<input type="checkbox"/>	●●●●●●●●●●●●	김[REDACTED]	소득자 본인	Y	N	N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내국인

구분	금액	구분	금액
1. 본인	1,500,000	5. 장애인	0명
2. 배우자	0	6. 부녀자	0
3. 부양가족	0명	7. 한부모가족	0
4. 70세 이상인 자	0명	8. 인적공제 계	1,500,000

닫기 **입력완료**

② 종교인(기타)소득으로 신고

● 02: 종교인소득세 신고서 입력

- ① 본인이 부담한 국민연금보험료 불입액을 기재
(교단 연금은 해당 사항 없음.)
- ② 기부금(이월분)소득공제는 종교인소득만 있는 경우 해당 없음

X ~~(42) 기부금(이월분) 소득공제~~: 직전 과세년도에 이월된 기부금을 기부금 종류별 공제한도 범위 이내로 계산하여 입력합니다.

(43) 연금보험료공제: 국민연금 등 공적연금 관련법에 따른 보험료를 납부한 금액을 적습니다.

도움말

0 원

1

0 원

(44) 개인연금저축공제: 개인연금저축 불입액에 40%를 곱한 금액과 72만원 중 적은 금액을 적습니다.

0 원

(45) 중소기업 창업투자조합 출자 등 공제

계산하기

도움말

0 원

(46) 소득공제 등 종합한도 초과액

0 원

(47) 과세표준 : (33) – (34) ("0"보다 적은 경우에는 "0"으로 합니다.)

900,000 원

(48) 세율

6.00 %

(49) 산출세액 : (47) × (48) – 누진공제액

54,000 원

(50) 세액공제 : 세액공제명세 (51 ~ 57)의 합계금액을 적습니다.

240,000 원

② 종교인(기타)소득으로 신고

● 02: 종교인소득세 신고서 입력 [자녀세액공제]

- ① 자녀세액공제와 자녀장려금은 **중복수혜 불가** (선택)
- ② 만 7세~20세 (01.01.01~13.12.31 출생자) 및 2020년 출산(입양)자녀대상

▶ 세액공제명세

(51) 자녀 세액 공제	(51-1) 기본공제 자녀(입양자, 위탁아동 포함) ※ 2명 이하: 1명당 15만원, 자녀 2명 초과 : 30만원 + 2명 초과 1명당 30만원	<input type="button" value="도움말"/>	0 명	0 원
	(51-2) 출산·입양 자녀 ※ 출산·입양 자녀가 첫째인 경우 30만원, 둘째인 경우 50만원, 셋째 이상인 경우 70만원		<input type="checkbox"/> 첫째 <input type="checkbox"/> 둘째 <input type="checkbox"/> 셋째이상	0 명 명

자녀세액공제 (소법 제59조의 2)	자녀장려금 (조특법 제100조의 27)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요건 : 아래 중 1가지에 해당 <ul style="list-style-type: none"> ① 만 7세~20세 자녀 부양 ② 2020년 출산 · 입양 ➤ 공제액 : ① + ② <ul style="list-style-type: none"> ① 1인당 15~30만원 ② 출산(입양) : 30~70만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요건 : 아래 3가지 요건 모두 충족 <ul style="list-style-type: none"> ① 만 18세 미만 자녀 부양 ② 부부합산소득 4,000만원 미만 ③ 가구원 전원 재산 합계 2억 미만 ➤ 지급액 : 1인당 50~70만원 지급

② 종교인(기타)소득으로 신고

● 02: 종교인소득세 신고서 입력 [기부금세액공제]

① '기부금 명세서' 버튼 눌러 기부금 내역 등록화면으로 이동

▶ 세액공제명세

(51) 자녀 세액 공제	(51-1) 7세 이상의 기본공제 자녀(입양자, 위탁아동 포함) ※ 2명 이하: 1명당 15만원, 자녀 2명 초과 : 30만원 + 2명 초과 1명당 30만원	<input type="button" value="도움말"/>	0 명	0 원
	(51-2) 출산·입양 자녀 ※ 출산 입양 자녀가 첫째인 경우 30만원, 둘째인 경우 50만원, 셋째 이상인 경우 70만원	<input type="checkbox"/> 첫째 <input type="checkbox"/> 둘째 <input type="checkbox"/> 셋째이상	0 명	0 원
(52) 연금계좌세액공제	공제 대상금액	<input type="button" value="0 원"/>		0 원
(53) 기부금세액공제	「소득세법」 제34조제2항 제1호에 따른 기부금 공제 대상금액	<input type="button" value="0 원"/>		0 원
1 기부금명세서 <input type="button" value="도움말"/>	「소득세법」 제34조제3항 제1호에 따른 기부금 공제 대상금액	<input type="button" value="240,000 원"/>		36,000 원
	우리사주조합 공제 대상금액	<input type="button" value="0 원"/>		0 원
	(54) 표준세액공제	<input type="button" value="70,000 원"/>		
(55) 전자신고세액공제 : 납세자가 전자신고 방법에 의하여 직접 신고하는 경우 2만원을 공제합니다.	<input type="button" value="20,000 원"/>			
(56) 정치자금기부금 세액공제	10만원 이하	<input type="button" value="0 원"/>		
	10만원 초과	<input type="button" value="0 원"/>		
(57) 외국납부세액공제 <input type="button" value="계산기"/>				0 원
(58) 결정세액 : (49) - (50)("0"보다 적은 경우에는 "0"으로 합니다.)				0 원
(59) 가산세액 : 무신고 등에 해당하는 경우 가산세액명세(60) ~ (62)의 합계 금액을 적습니다.				0 원

② 종교인(기타)소득으로 신고

● 02: 종교인소득세 신고서 입력 [세액공제-기부금]

- ① (기부명세) 추가 버튼을 눌러 기부금 내역을 등록
- ② 하단의 한도내역 알림 펼치기 화면으로 한도초과 금액 확인
- ③ (조정명세) 추가 버튼을 눌러 기부금 한도 초과액(이월액)을 등록

기부금명세서

기부금명세서										(단위: 원)	기부금 추가	선택내용 삭제
No	기부금 코드	기부내용	기부자		기부처		기부내역			기부금합계		
			성명	사업자(주민)등록번호	상호(성명)	건수	공제대상금액	공제제외 기부금				
1	소득세법 제34	금전	[REDACTED]	••••••••••••	효***	1	4,000,000	0	0	4,000,000		

· '해당연도 기부명세'에 입력된 자료는 '기부코드' 별로 합산되어 '기부금 조정명세'에 자동 입력됩니다.

기부금 조정명세

기부금 조정명세										(단위: 원)	기부금 조정명세 추가	선택내용 삭제
No	기부금 코드	기부년도	기부금액	전년까지 공제된 금액	공제대상금액	해당연도 공제금액			해당연도에 공제받지 못한 금액			
						필요경비	소득공제	세액공제	소멸금액	이월금액		
1	소득세법 제34	2020	4,000,000	0	4,000,000	0	0	4,000,000	0	0		

- '기부금 조정명세 추가'를 클릭하면 추가로 기부금 이월금을 입력할 수 있습니다.
- '해당연도 기부명세'에서 자동입력된 자료는 해당연도 기부명세에서 수정/삭제하시기 바랍니다.
- 이월금 입력 시 기부금 코드와 기부년도 별로 기부금액을 합산하여 입력합니다.

※ 이월된 기부금이 있는 경우 발생순서에 따라 순차적으로 먼저 해당연도 공제금액에 적용하고 남은 한도액의 범위내에서 당해연도에 발생한 기부금을 적용함

등록하기 닫기

② 기부금 세액공제 한도내역 알림 펼치기

② 종교인(기타)소득으로 신고

- ① 기부금 납입액과 하단의 공제한도금액을 공제금액 376만원으로 기재
- ② 한도 초과한 금액 24만원을 이월금액으로 기재

기부금 조정명세

(단위: 원) [기부금 조정명세 추가](#) [선택내용 삭제](#)

No	기부금 코드	기부년도	기부금액	전년까지 공제된 금액	공제대상금액	해당연도 공제금액			해당연도에 공제받지 못한 금액	
						필요경비	소득공제	세액공제	소멸금액	이월금액
1	소득세법 제34조	2020	4,000,000	0	4,000,000	0	0	240,000	0	3,760,000

$$400\text{만원} - 24\text{만원} = 376\text{만원}$$

[기부금 세액공제 한도내역 알림 접기](#)

종합소득금액

2,400,000

구분	기부금 한도액			공제대상금액		
	필요경비	소득 세액 공제	필요경비	소득공제	세액공제	
정치자금 10만원 이하	0	2,400,000	0	0	0	0
정치자금 10만원 초과	0	2,400,000	0	0	0	0
소득세법 제34조제2항제1호의 기부금 (이월)	0	2,400,000	0	0	0	0
소득세법 제34조제2항제1호의 기부금 (당해)	0	2,400,000	0	0	0	0
우리사주조합기부금	0	720,000	0	0	0	0
소득세법 제34조제3항제1호의 기부금 (종교단체 외)(이월)	0	240,000	0	0	0	0
소득세법 제34조제3항제1호의 기부금 (종교단체 외)(당해)	0	240,000	0	0	0	0
소득세법 제34조제3항제1호의 기부금 (종교단체)(이월)	0	240,000	0	0	0	0
소득세법 제34조제3항제1호의 기부금 (종교단체)(당해)	0	240,000	0	0	0	240,000

② 종교인(기타)소득으로 신고

① 적용된 기부금 세액공제금액을 확인

▶ 세액공제명세

(51) 자녀 세액 공제	(51-1) 7세 이상의 기본공제 자녀(입양자, 위탁아동 포함) ※ 2명 이하: 1명당 15만원, 자녀 2명 초과 : 30만원 + 2명 초과 1명당 30만원	<input type="button" value="도움말"/>	0 명	0 원
	(51-2) 출산·입양 자녀 ※ 출산·입양 자녀가 첫째인 경우 30만원, 둘째인 경우 50만원, 셋째 이상인 경우 70만원	<input type="button" value="도움말"/>	<input type="checkbox"/> 첫째 <input type="checkbox"/> 둘째 <input type="checkbox"/> 셋째이상	0 명 명
(52) 연금계좌세액공제	공제 대상금액	<input type="text" value="0"/> 원		0 원
(53) 기부금세액공제 <input type="button" value="기부금명세서"/> <input type="button" value="도움말"/>	「소득세법」 제34조제2항 제1호에 따른 기부금 공제 대상금액	<input type="text" value="0"/> 원		0 원
	「소득세법」 제34조제3항 제1호에 따른 기부금 공제 대상금액	<input type="text" value="240,000"/> 원		<input type="text" value="36,000"/> 원
	우리사주조합 공제 대상금액	<input type="text" value="0"/> 원		0 원
(54) 표준세액공제				70,000 원
(55) 전자신고세액공제 : 납세자가 전자신고 방법에 의하여 직접 신고하는 경우 2만원을 공제합니다.			<input type="text" value="20,000"/> 원	
(56) 정치자금기부금 세액공제	10만원 이하			0 원
	10만원 초과			0 원
(57) 외국납부세액공제 <input type="button" value="계산기"/>				0 원
(58) 결정세액 : (49) – (50)(“0”보다 적은 경우에는 “0”으로 합니다.)				0 원
(59) 가산세액 : 무신고 등에 해당하는 경우 가산세액명세(60) ~ (62)의 합계 금액을 적습니다.				0 원

② 종교인(기타)소득으로 신고

● 03: 신고서 제출

- ① '신고서 제출합니다.' 체크
- ② 신고서 작성완료

(62) 납부지연	<input type="button" value="계산기"/>	미납부(환급)세액	<input type="text" value="0 원"/>	25/100,000	<input type="text" value="0 원"/>
-----------	------------------------------------	-----------	----------------------------------	------------	----------------------------------

(63) 총결정세액 : (58) + (59)	0 원	
기납부 세 액	(64) 원천징수세액	0 원
(65) 납부할 세액 또는 환급받을 세액 : (63) - (64)	0 원	

※ 환급받을 세액이 5천만원 이상인 경우 도움말버튼을 클릭하세요. 도움말 ※ 개인자방소득세는 지방자치단체에 별도 신고해야 합니다.
(홈택스에서 소득세 신고 종료후 클릭 한번으로 간편하게 신고)

신고인은 「소득세법」 제70조 및 「국세기본법」 제45조의3에 따라 위의 내용을 신고하며,
 위 내용을 충분히 검토하였고 신고인이 알고 있는 사실 그대로를 정확하게 적었음을 확인합니다.
 위 내용 중 과세표준 또는 납부세액을 신고하여야 할 금액보다 적게 신고하거나 환급세액을 신고하여야 할 금액보다 많이 신고한 경우에는
 국세기본법 제47조의3에 따른 가산세 부과 등의 대상이 됨을 알고 있습니다.

①



이에 동의하며 신고서를 제출합니다.

②

이전

신고서 작성완료

② 종교인(기타)소득으로 신고

● 03: 지방소득세 신고

- ① [Step 2.] 신고내역 클릭
- ② 지방소득세 [신고이동] 클릭
- ③ 이후 방법은 '근로소득' 신고 방법과 동일

Step 1. 세금신고 Step 2. 신고내역 Step 3. 삭제내역

1

■ '사업자등록번호/주민등록번호'를 입력하면 **최대 1년치**의 신고 내역을 조회할 수 있습니다.
 ■ 조회된 목록에서 [접수번호], [접수여부(첨부서류)]를 각각 선택하면 신고서원장, 제출서식목록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 [부속서류제출]에서 PDF 형태로 신고 관련 부속서류를 제출한 경우에는 [부속서류제출여부]에서 'Y'로 보여집니다.
 [부속서류제출여부]의 (Y/N)을 클릭하여 부속서류 제출내역을 확인하거나 추가 제출할 수 있습니다.
 ■ 신고서 제출 후 납부할 세액이 있는 경우 [납부할 세액 조회납부]를 통해 반드시 신고기한 23시 30분 까지 납부하시기 바랍니다.
 자세한 납부방법을 확인하시려면 [납부방법 확인]을 클릭하시기 바랍니다.
 ■ 2020년 1월 1일부터는 개인지방소득세는 지방자치단체에 신고해야합니다.
 개인지방소득세 신고를 위해 아래의 조회하기 → 「지방소득세 신고하기」 버튼을 클릭하세요(간편히 신고 가능)
 개인지방소득세 경정청구는 지방자치단체에 직접 해야 하나 국세가 경정되는 경우 지방소득세는 별도의 청구가 없어도 환급이 가능합니다.

④ 신고서 제출목록

* 신고일자	2021-04-18	<input type="button" value=""/>	~	2021-05-18	<input type="button" value=""/>	사업자등록번호/주민등록번호	<input type="text"/>
* 정보 공개여부	<input checked="" type="radio"/> 여	<input type="radio"/> 부	※ 정보 공개 대상 :	① 신고내역의 상호(성명) 항목	② 접수증의 상호(성명), 사업자번호, 사용자 ID, 사용자명 항목		

조회하기

총 1건의 신고내역이 있습니다.

개별납부서 일괄 출력										접수증 일괄조회 및 인쇄			개별접수증 일괄 출력			10건	▼	확인
□	과세연월	신고서 종류	신고구분	신고유형	상호 (성명)	사업자(주민) 등록번호	접수방법	접수일시	접수번호 (신고서보기(첨부서류))	접수여부(첨부서류)	접수증	납부서	제출자 ID	부속서류 제출여부	지방 소득세			
<input type="checkbox"/>	2020…	종합…	정…	정…	박 [REDACTED]	[REDACTED]..	안…	2021-…	109-…	정상(7…)	<input type="button" value="보기"/>	<input type="button" value="보기"/>	q…	N	<input type="button" value="신고이동"/>			

2

복수소득으로 신고하는 경우

③ 복수소득으로 신고

● 01: 기본사항

종합소득세 신고

분류소득세에 대비하여 사용되는 용어로서
 개인에게 귀속되는 각종 소득을 종합하여 과세하는 소득세



작성방법
요약

전자신고 이용방법
(동영상, 매뉴얼)

신고도움
서비스

금융소득

주요 변경사항 및
자주 묻는 질문

- ▶ 단순경비율 추계신고서
[사업소득(연금·기타소득이 함께 있는 경우 포함)]

* 신고 안내유형이 F.G 인 경우

정기신고
작성

기한후신고
작성

수정신고작성

경정청구작성

- ▶ 일반신고서

* 사업소득(기준경비율, 간편장부, 복식부기),
근로소득, 금융소득, 기타소득, 연금소득
* 신고 안내유형이 F.G.Q.R 이 아닌 경우

정기신고
작성

기한후신고
작성

수정신고작성

경정청구작성

파일변환 신고
(회계 프로그램 등)

- ▶ 근로소득자 신고서

* 근로소득만 있는 경우, 종교인근로소득자

정기신고
작성

경정청구작성

- ▶ 분리과세 소득자 신고서

* 총수입금액 2천만원 이하 주택임대소득
(V 유형만 안내받은 경우)
* 계약금이 위약금·배상금으로 대체되는
기타소득이 있는 경우

정기신고
작성

기한후신고
작성

수정신고작성

경정청구작성

파일변환 신고
(회계 프로그램 등)

- ▶ 종교인소득자 신고서

(종교인소득만 있는 경우)

* 신고 안내유형이 Q.R 인 경우

정기신고
작성

기한후신고
작성

수정신고작성

경정청구작성

③ 복수소득으로 신고

● 01: 기본사항 (직장을 다니는 목회자 가정)

▶ 신고인 기본사항

[새로 작성하기](#)[신고서 불러오기](#)

개인 단체	<input checked="" type="radio"/> 개인 <input type="radio"/> 단체(종종)	개인 또는 단체(종종) 대하여 신고할 경우에 선택합니다.				
귀속년도	2020	납세자 번호	8 [REDACTED] - [REDACTED]	조회	성명	박***
주소	도로명 주소 : 서울특별시 [REDACTED] 지번 주소 : 서울특별시 [REDACTED]					
주소지 전화	[REDACTED] - [REDACTED] - [REDACTED]	사업장 전화	[REDACTED] - [REDACTED] - [REDACTED]	휴대 전화	010	- [REDACTED] - [REDACTED]
전자 메일	[REDACTED] @ [REDACTED]	직접입력	▼			
내 외국인	내국인	거주 구분	거주자	거주 지국	KR	대한민국
신고 유형	비사업자	기장 의무	비사업자	신고 구분	정기(확정)	
장애인 여부	○ 여 <input checked="" type="radio"/> 부 ※ 비장애인의 "예"로 선택한 경우 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분리과세 여부	○ 여 <input checked="" type="radio"/> 부	

▶ 소득종류 선택(복수선택 가능)※ 나의 소득종류 찾기를 클릭하시면, 소득종류와 사업장 명세를 입력하실 수 있습니다.

[나의 소득종류 찾기](#)

- | | | | |
|---------------------------------------|--|--|---|
| <input type="checkbox"/> 부동산임대업의 사업소득 | <input type="checkbox"/> 부동산임대업외의 사업소득 | <input checked="" type="checkbox"/> 균로소득 | <input checked="" type="checkbox"/> 기타소득 |
| <input type="checkbox"/> 연금소득 | <input type="checkbox"/> 이자소득 | <input type="checkbox"/> 배당소득 | <input type="checkbox"/> 분리과세(주택임대, 기타소득) |

③ 복수소득으로 신고

● 02: 소득금액명세 (지급명세서 제출분)

- ① 근로/연금/기타(종교인)소득 불러오기 → 지급명세서가 제출된 자료
- ② 직접 입력 → 지급명세서가 제출되지 않은 자료

① 근로 · 기타(종교인) · 연금소득 명세서

화면도움말

* 종교인소득을 근로소득으로 신고하는 경우 소득구분 코드는 58, 기타소득으로 신고하는 경우 소득구분 코드는 67입니다.

* 공적 연금소득은 5개 사업자등록번호(219-82-01593 국민연금공단, 106-83-03929 국군재정관리단, 220-82-00935 공무원연금공단, 110-82-05569 별정우체국연금관리단, 116-82-01445 사립학교교직원연금공단) 중 하나는 꼭 허 입력되어야 합니다.

①

근로/연금/기타(종교인)소득 불러오기

②

소득구분		전체-	상호(성명)
소득의지급자	사업자등록번호 (주민등록번호)	<input type="text"/> 확인	<input type="text"/>
⑤총수입금액 (총급여액 · 총연금액)		<input type="text"/>	⑥필요경비 (근로소득공제 · 연금소득공제) <input type="button" value="도움말"/>
소득금액(⑤ - ⑥)		<input type="text"/>	<input type="text"/>
원천징수 소득세 (지방소득세는 제외)		<input type="text"/>	원천징수 농어촌특별세 <input type="text"/>

원천징수의무있는 국내근로소득 51
 근로소득으로 확정신고한 종교인소득 58
 기타소득 60
 종교인소득 67

등록하기

③ 복수소득으로 신고

● 02: 소득금액명세 (지급명세서 제출분-근로소득)

- ① 근로소득 불러오기
- ② 선택박스 체크 후 선택완료

①

근로소득 불러오기

연금소득 불러오기

기타(종교인)소득 불러오기

▪ 근로소득

* 주(현)근무지에서 종(전)근무지를 포함해 연말정산한 경우에는 총급여액이 합산되어 결정세액이 계산되어 있으므로
 종(전)근무지를 추가로 선택하면 총급여액, 결정세액(기납부세액)이 중복으로 입력될 수 있습니다. 반드시 중복 입력여부를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②



②

선택완료

선택내용 삭제

	소득구분	사업자등록번호	상호	총수입금액 (총급여액-총연금액)	소득세 (결정세액)
<input checked="" type="checkbox"/>	근로소득	[REDACTED]	[REDACTED] (주)	8,400,000	0

위 내용대로 적용하기

직접 입력하기

③ 복수소득으로 신고

● 02: 소득금액명세 (지급명세서 제출분-기타소득)

- ① 기타소득, 종교인소득 불러오기
- ② 선택박스 체크
- ③ 근로소득, 기타소득, 종교인소득 모두 불러왔으면 '위 내용대로 적용하기' 선택

①

근로소득 불러오기	연금소득 불러오기	기타(종교인)소득 불러오기
-----------	-----------	-----------------------

▪ 기타소득 → 기타소득 지급명세서(연간집계표)를 제출한 경우 & 외부강사등

②	<input checked="" type="checkbox"/>	구분	사업자번호	상호	총수입금액	소득세
	<input checked="" type="checkbox"/>	기타소득지급명세서	[REDACTED]	기독교 [REDACTED]	25,000,000	0

▪ 종교인소득 → 종교인소득지급명세서(연말정산용)를 제출한 경우

* 주(현)종교단체에서 종(전)종교단체를 포함해 연말정산한 경우에는 총수입금액이 합산되어 결정세액이 계산되어 있으므로 종(전)종교단체를 추가로 선택하면 총수입금액, 결정세액(기납부세액)이 중복으로 입력될 수 있습니다. 반드시 중복 입력여부를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택	구분	종교단체 사업자번호	종교단체명	총수입금액	결정세액
----	----	------------	-------	-------	------

②

선택완료

선택내용 삭제

<input type="checkbox"/>	소득구분	사업자등록번호	상호	총수입금액 (총급여액·총연금액)	소득세 (결정세액)
<input checked="" type="checkbox"/>	근로소득	[REDACTED]	[REDACTED](주)	8,400,000	0
<input checked="" type="checkbox"/>	기타소득	[REDACTED]	기독교 [REDACTED]	25,000,000	0

③

위 내용대로 적용하기

직접 입력하기

③ 복수소득으로 신고

● 02: 소득금액명세 (지급명세서 미제출분)

- ① 종교인소득을 **근로소득** 신고하려는 경우 (58)를, **기타소득** 신고하려는 경우 (67)
- ② 그외 소득은 적절한 코드 선택 (51) 또는 (60)

박*** 님 | [REDACTED]

제출여부 >>> 재제출 작성중입니다. | 신고도움 서비스 | 미리보기

화면도움말

④ 근로 · 기타(종교인) · 연금소득 명세서

* 종교인소득을 근로소득으로 신고하는 경우 소득구분 코드는 58, 기타소득으로 신고하는 경우 소득구분 코드는 67입니다.
 * 공적 연금소득은 5개 사업자등록번호(219-82-01593 국민연금공단, 106-83-03929 국공재정관리단, 220-82-00935 공무원연금공단, 110-82-05569 별경우체국연금관리단, 116-82-01445 사립학교교직원연금공단) 중 하나는 꼭 허 입력되어야 합니다.

근로/연금/기타(종교인)소득 불러오기

소득구분		-전체-	상호(성명)
소득의지급자	사업자등록번호 (주민등록번호)	[REDACTED] 확인	[REDACTED]
⑤총수입금액 (총급여액 · 총연금액)		⑥필요경비 (근로소득공제 · 연금소득공제)	[REDACTED]
소득금액(⑤ - ⑥)		도움말	
원천징수 소득세 (지방소득세는 제외)		원천징수 농어촌특별세	

등록하기

	소득구분	사업자등록번호 (주민등록번호)	상호 (성명)	⑤총수입금액 (총급여액·총연금액)	⑥필요경비 (근로소득공제· 연금소득공제)	소득금액 (⑤ - ⑥)
<input type="checkbox"/>	51	[REDACTED]	[REDACTED]	8,400,000	4,860,000	3,540,000
<input type="checkbox"/>	60	[REDACTED]	[REDACTED]	25,000,000	18,500,000	6,500,000

이전 | 저장 후 다음이동

-전체-

전체	소득구분
원천징수의무 있는 국내 근로소득	51
미국군 근로소득	52
국외 근로소득	53
납세조합 가입자 근로소득	55
주식매수선택권 행사 근로소득	56
원천징수의무 없는 근로소득	57
근로소득으로 확정신고한 종교인소득	58
기타소득	60
동업기업에서 배분받은 기타소득	61
연금소득	66
종교인소득	67

③ 복수소득으로 신고

● 공제사항 등록과 신고서 제출

근로소득/기타소득으로 신고시 작성하는
공제사항등록 절차와 동일

④ 신고 내역과 납부서 확인

- ① 신고 초기화면의 '신고내역' 탭을 클릭하여 신고된 내역을 확인
- ② '접수번호'를 클릭하면 신고한 신고서 사본을 확인할 수 있음
- ③ '납부서'를 클릭하면 계좌이체할 수 있는 납부서 출력할 수 있음

종합소득세

1

Step 1. 세금신고 Step 2. 신고내역 Step 3. 삭제내역

- '사업자등록번호/주민등록번호'를 입력하면 **최대 1년치**의 신고 내역을 조회할 수 있습니다.
- 조회된 목록에서 [접수번호], [접수여부(첨부서류)]를 각각 선택하면 신고서원장, 제출서식목록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 [부속서류제출]에서 PDF 형태로 신고 관련 부속서류를 제출한 경우에는 [부속서류제출여부]에서 'Y'로 보여집니다.
[부속서류제출여부]의 (Y/N)을 클릭하여 부속서류 제출내역을 확인하거나 추가 제출할 수 있습니다.
- 신고서 제출 후 납부할 세액이 있는 경우 [납부할 세액 조회납부]를 통해 반드시 신고기한 23시 30분 까지 납부하시기 바랍니다.
자세한 납부방법을 확인하시려면 [납부방법 확인]을 클릭하시기 바랍니다.
- 2020년 1월 1일부터는 개인지방소득세는 지방자치단체에 신고해야합니다.
개인지방소득세 신고를 위해 아래의 **조회하기** → 「지방소득세 신고하기」 버튼을 클릭하세요(간편히 신고 가능)
개인지방소득세 경정청구는 지방자치단체에 직접 해야 하나 국세가 경정되는 경우 지방소득세는 별도의 청구가 없어도 환급이 가능합니다.

신고서 제출목록

* 신고일자	2021-04-18	~	2021-05-18	사업자등록번호/주민등록번호
* 정보 공개여부	<input checked="" type="radio"/> 여	<input type="radio"/> 부	* 정보 공개 대상 :	① 신고내역의 상호(성명) 항목 ② 접수증의 상호(성명), 사업자번호, 사용자 ID, 사용자명 항목

조회하기

총 1건의 신고내역이 있습니다.

개별납부서 일괄 출력

접수증 일괄조회 및 인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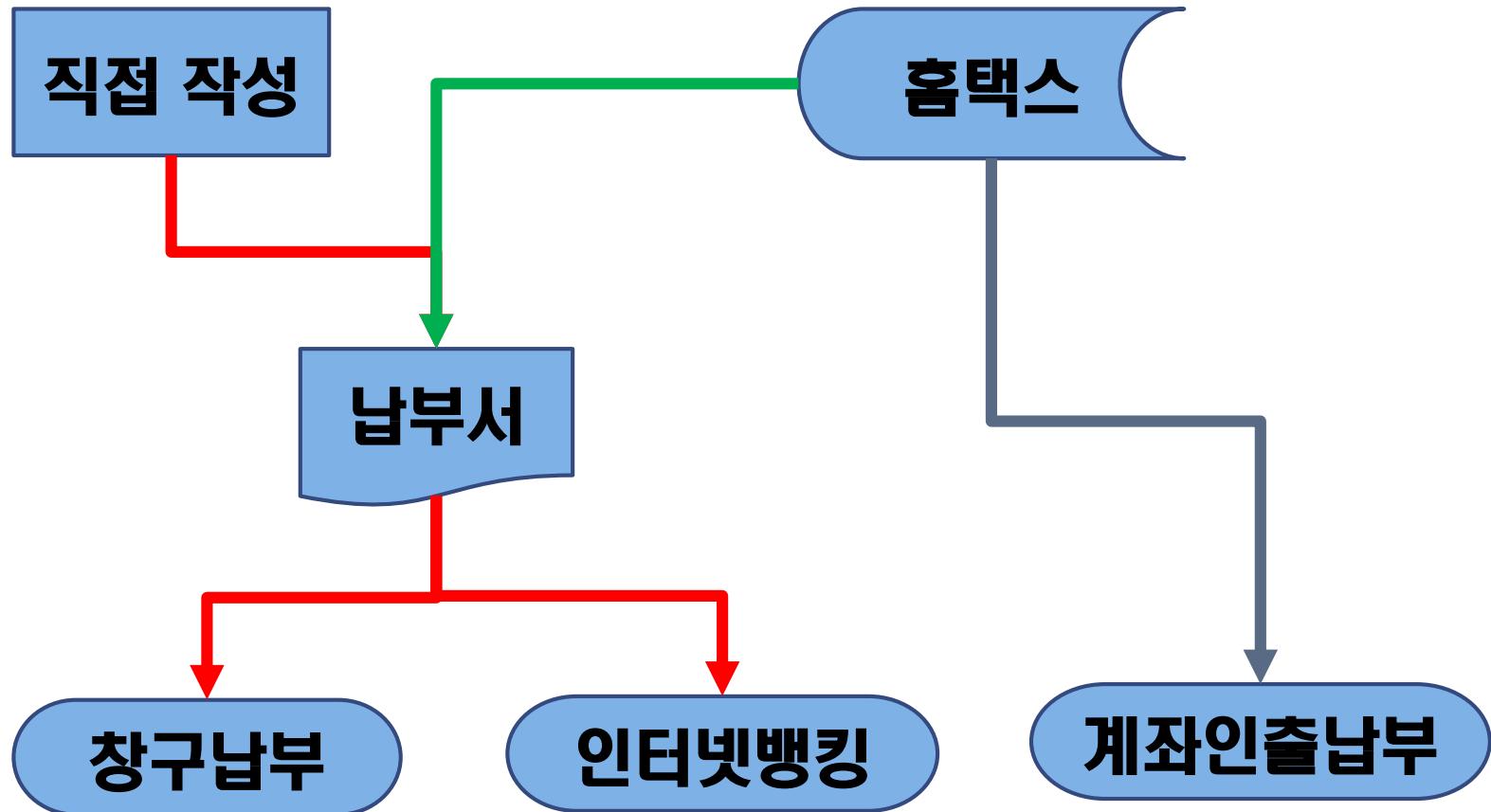
개별접수증 일괄 출력

10건

확인

□	과세연월	신고서 종류	신고구분	신고유형	상호 (성명)	사업자(주민) 등록번호	접수방법	접수일자	접수번호	접수여부	접수증 납부서	제출자 ID	부속서류 제출여부	지방 소득세
□	2020…	종합…	정…	정…	[REDACTED]	[REDACTED]	인…	2021-…	109-…	정상(7…)	보기	q…	N	신고이동

납부 방식



홈택스 전자납부

≡ 신고/납부

국세납부

납부할 세액 조회납부

납부할 세액 조회납부

- 납부하기를 놓쳤을 때 납부가 안된다면
 - ① 도구-인터넷옵션-보안-신뢰할 수 있는 사이트를 클릭한 후
‘이영역에 있는 모든사이트에 대해 서버 확인 필요’의 체크박스를 해제하고, *.hometax.go.kr과 *.giro.or.kr를 앱사이트에 추가
 - ② 그래도 납부가 안되면 www.giro.or.kr에 접속하여 납부고객용-인터넷으로를 클릭하여 설치프로그램을 모두 설치한 후 다시 시도
- 납부를 완료한 후에 결과확인은 반드시 ‘조회하기’ 버튼을 눌러야 합니다.
- 인지세의 경우 최근에 신고한 건이 아래쪽에 조회됩니다.

조회하기

W 납부할 총 건수 및 금액

• 납부할 건수 : 1 건 • 납부할 세액 **1,361,2730 원**

총 1 건의 납부해야 할 결과가 있습니다.

도움말

관서명(관서코드)	과세구분	세목	귀속년도	납부기한	납부할세액	납부세액	담당자	전자납부번호
<input type="checkbox"/> 용산(106)	정기신고	종합소득세	2020	2020-05-31	3,612,730	<input type="text"/>	김현(0…)	0126-1510-3-41-83046511

이용안내

- 인터넷 세금신고 자료에 한하여 신고납부기한까지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단, 부가기치세 신고기간 후에는 신고한 납부정보는 신고당일에만 서비스)
- 신고납부기한 이후에는 [자진납부]를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 지방소득세는 지방세이므로 위택스 (www.wetax.go.kr)에서 납부하시기 바랍니다.
- 납부결과확인과 납부확인서 출력은 조회/발급-세금신고납부-[납부내역조회]를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납부하기

납부서 출력

가상계좌번호 SMS 전송

근로장려금 / 자녀장려금

- **근로장려금:** 일정금액 미만 근로자, 종교인, 사업소득자 가구에 대해 근로를 장려하고 지원하는 장려금
- **자녀장려금:** 부부합산 총소득 4천만원 미만 경우 18세 미만 자녀 양육을 지원하는 장려금
 - 종교인 소득 신고 방식과 관계없이 근로/자녀 장려금 신청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근로/자녀 장려금을 신청할 수 있음
 - **신청시기 (2020년 귀속 소득분): 2021/5/1 ~ 5/31**
 - ✓ 2020년 9월 또는 2021년 3월에 반기신청을 한 경우, 정기신청 대상이 아님
 - **지급시기 (2020년 귀속 소득분) : 9월 말까지 지급**
 - **허위 신청사:**
 - ✓ 고의, 중과실: 2년간 지급제한
 - ✓ 사기, 부정: 5년간 지급제한

근로장려금 (EITC: Earned Income Tax Credit)

● 대상:

- **근로소득자, 사업소득자, 종교인소득자**
- **소득기준: 부부합산소득 아래 금액 미만**
 - 단독가구: 2,000만원 (<=3~150만원 지급)
 - 홀벌이가구: 3,000만원 (<=3~260만원 지급)
 - 맞벌이가구: 3,600만원 (<=3~360만원 지급)
- **재산기준: 가구원 전원 재산합계액이 2억원 미만 (2020.6.1 기준)**

- 단독가구: 홀벌이, 맞벌이 가구에 해당 하지 않는 경우
- 홀벌이: 배우자(총 급여등이 3백만원 이하)나 부양자녀(18세미만)가 있거나 생계를 같이 하는 70세 이상 부모(각각의 연간 소득금액 100만원 이하)가 있는 경우
- 맞벌이: 신청자와 배우자 각각 총급여액 등(사업소득, 근로소득, 종교인소득을 합한 금액)이 3백만원 이상인 가구

자녀장려금 (CTC: Child Tax Credit)

- **대상:**

- **근로소득자, 사업소득자, 종교인소득이 있을 것**
- **가구요건: 부양자녀(만18세미만 '02.1.1 이후 출생)가 있을 것**
- **소득기준: 부부합산소득 아래 금액 미만**
 - **홀벌이가구: 4,000만원 (<=1인당 50~70만원 지급)**
 - **맞벌이가구: 4,000만원 (<=1인당 50~70만원 지급)**
- **재산기준: 가구원 전원 재산합계액이 2억원 미만**

- **홀벌이:** 배우자(총 급여등이 3백만원 이하)나 부양자녀(18세미만)가 있거나 생계를 같이 하는 70세 이상 부모(각각의 연간 소득금액 100만원 이하)가 있는 경우
- **맞벌이:** 신청자와 배우자 각각 총 급여액등(사업소득, 근로소득, 종교인소득을 합한 금액)이 3백만원 이상인 가구

홈택스 접속 (www.hometax.go.kr)

① 신청/제출 → 근로장려금·자녀장려금

인터넷 납세 서비스
Hometax.국세청홈택스

조회/발급 민원증명 **신청/제출** 신고/납부 상담/제보

검색 전체메뉴

≡ 신청/제출

신청/제출

국세청에서 주관하는 민원사무를 인터넷으로 신청 또는 제출할 수 있습니다.

기존 홈택스 서비스를 포함하여 현금영수증전용카드, 근로장려금, 연말경산소득공제자료의 신청 또는 제출 서비스가 함께 제공됩니다.

- 신청 업무는 승인, 허가, 신고 등의 민원을 인터넷으로 이용, 첨부서류가 있는 민원의 경우 pdf파일로 첨부하여 제출합니다.
- 신청 후 나의 민원신청내역에서 결과를 확인합니다.

근로장려금 · 자녀장려금 (Red box)

사업자등록 신청/정정 등

현금영수증전용카드 신청/등록

전산매체제출

주요세무서류신청 바로가기

- 사업용(공익법인용)계좌 개설관리
- 송달장소(변경) 신고
- 환급계좌개설(변경)신고서
- 원천징수세액 반기별납부 승인신청
- 원천징수세액 반기별납부 포기신청
- 신고기한 연장신청
- 신고분 납부기한 연장신청
- 고지분 납부기한등 연장(구.정 수유예) 신청
- 비거주자등의국내원천소득에 대한 소득세(법인세) 납세사실 증명
- 주사업장총괄납부 승인신청
- 주사업장총괄납부 변경신청
- 거주자증명서 발급신청서

납세자보호민원

신청업무

- 휴폐업신고
- (휴업자)재개업신고
- 전자고지(송달) 신청/해지
- 세법해석(서면질의/사전답변)
- 불복(과적/이의/심사등)신청
- 외부위원회지원서제출
- 민원서류발급 제한(해지신고)
- 전자(세금)계산서자료신청
- 부별납세자 초기(시초)

근로장려금/자녀장려금 신청

- ① 안내문(우편, 카카오톡)을 받은 경우 : 간편신청하기 클릭
- ② 안내문을 받지 못한 경우 : 일반신청하기 클릭

근로장려금·자녀장려금

근로·자녀 장려금 신청 서비스 및 장려금 관련 제도에 대한 서비스를 받을 수 있습니다.
개인, 사업자 등 로그인한 사용자 유형별로 보여지는 메뉴가 다를 수 있습니다.



1 **간편신청하기**
(신청안내문을 받은 경우)

2 **일반신청하기**
(신청안내문을 받지 못한 경우)

첨부서류제출

신청확인 및 취소

심사진행상황조회

신청안내대상 여부 조회

소득자로 확인하기

소득정보 제공등의 신청

주택 등 기준시가 조회

승용차 가액조회

현지점수창구조회

근로(자녀)장려금 수급사실 증명

반기 근로장려금

간편신청하기
(신청안내문을 받은 경우)

일반신청하기
(신청안내문을 받지 못한 경우)

첨부서류제출

신청확인 및 취소

심사진행상황조회

신청안내대상 여부 조회

소득자로 확인하기

소득정보 제공등의 신청

주택 등 기준시가 조회

승용차 가액조회

현지점수창구조회

2021년 5월 근로·자녀 장려금 신청 안내문

총길동 개별인증번호 6382 2692 님은 1544-9944로 전화하시어 5월 31일까지 신청하시기 바라며, 신청하신 장려금은 요건(뒷면 참조)을 심사하여 충족된 경우 9월말에 지급합니다.

「손택스·홈택스로 신청가능」

- 스마트폰·손택스 앱 다운로드
- 인터넷 : www.hometax.go.kr

「신청도움서비스 이용하기」

- 1544-9944, 손택스·홈택스 신청이 어려운 경우 아래로 전화하여 신청을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① 장기상당센터 : 1566-3636
② 김포 세무서 소득세 과
• 전화 031-980-****

국세청 알림톡 도착

대한민국 대전방 한국판뉴딜

국세청에서 발송한 전자문서가 도착했습니다.

안녕하세요, 국세청입니다.
님은 2021년 5월에
근로장려금을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 정기신청이용시간

- 정기신청
'21.5.1.~5.31. 06:00~24:00
- 기한 후 신청
'21.6.1.~11.30. 06:00~24:00

제도안내 계산해보기

▶ 반기신청이용시간

- 상반기신청
'20.9.1.~9.15. 06:00~24:00
- 하반기신청
'21.3.1.~3.15. 06:00~24:00

제도안내 계산해보기

근로장려금/자녀장려금 일반신청

인적사항작성>**소득명세작성**>**전세금명세작성**>**계좌정보작성**>**신청확인및전송**

- ① 가구원명세는 2020/12/31 기준 생계를 같이 하는 모든 동거 가족을 기록
 - ② 공인인증서로 로그인 한 경우 가족 정보 조회되며, 사실과 다른 경우 수정/삭제

④ 신청자 기본사항

귀속년도	2020	성명	<input type="text"/>	주민등록번호	<input type="text"/> - <input type="text"/>	확인
	우편번호	<input type="text"/>	주소검색			
주소	경기도 <input type="text"/> 차아파트)					
	건물명 (아파트, 상가)	<input type="text"/> 1차아파트	<input type="text"/> 동 (<input type="text"/> 층)	<input type="text"/> 호		
유선전화	02	- <input type="text"/> - <input type="text"/> <input type="text"/> <input type="text"/>	휴대전화번호		010	- <input type="text"/> - <input type="text"/> <input type="text"/> <input type="text"/>
전자우편주소	ms*	@ <input type="text"/> .c	직접입력	▼	결정통지서수령방법	우편물

※ 연락처 : 전화번호와 휴대전화번호 중 반드시 1개 이상 입력하시기 바랍니다.

• 가구원 명세

관계	성명	주민등록번호	장애인/상이자 여부	삭제
배우자	***	-*****	아니오	삭제
자녀	***	-*****	아니오	삭제
기타	***	-*****	아니오	삭제
기타	***	-*****	아니오	삭제
자녀세액공제금액	0 원	70세이상 부모부양 여부	<input checked="" type="radio"/> 예 <input type="radio"/> 아니오	

자녀세액공제금액

0

70세이상 부모부양 여부

예 아니요

메인화면가기

다음단계

종료하기

근로장려금/자녀장려금 일반신청

인적사항작성>**소득명세작성**>전세금명세작성>계좌정보작성>신청확인및전송

- ① 조회된 금액이 사실과 다른 경우 금액을 수정 / 항목 삭제
- ② '소득'은 비과세소득 제외한 수입금액을 의미 (필요경비 공제 전)
- ③ '소득' 금액을 수정한 경우 소득 증거서류를 첨부 서류로 제출 필요

① 근로소득 명세

근로소득이 있는 경우 여기를 눌러서 입력하시기 바랍니다.					
국세청자료불러오기 추가					
소득자	소득발생처 사업자등록번호	소득발생처 상호(법인)명	국세청자료	확인금액 (근로소득)	삭제
본인				800,000	1 27,000,000 삭제
본인				760,000	1,760,000 삭제
합계				560,000	28,760,000

② 종교인소득 명세

종교인소득이 있는 경우 여기를 눌러서 입력하시기 바랍니다.					
국세청자료불러오기 추가					
소득자	소득발생처 사업자등록번호	소득발생처 상호(법인)명	국세청자료	확인금액 (종교인소득)	삭제
조회된 내역이 없습니다.					
합계				0	0

③ 사업소득 명세

사업소득이 있는 경우 여기를 눌러서 입력하시기 바랍니다.								
국세청자료불러오기 추가								
소득자	원천징수 여부	소득발생처 사업자등록번호	소득발생처 상호(법인)명	국세청자료	확인금액 (총수입금액)	업종	조정률 (%)	사업소득 1 삭제
본인	<input checked="" type="checkbox"/>		(사)*****	517,064	517,064	인적용역	940911	업종 90 465,357 삭제
본인	<input checked="" type="checkbox"/>		주식*****	1,000,000	1,000,000	인적용역	940909	업종 90 900,000 삭제
합계				1,517,064	1,517,064			1,365,357

부부합산 연간 총급여액 등

30,125,357 원

[메인화면가기](#)

[이전단계](#)

[다음단계](#)

[종료하기](#)

근로장려금/자녀장려금 일반신청

인적사항작성>소득명세작성>**전세금명세작성**>계좌정보작성>신청확인및전송

① 신청자와 가구원이 임차한 주택, 상가 등이 있는 경우에만 작성

② 전세금(임차보증금) 명세

[추가]

임차인	임대인 성명	임대인 사업자번호 (주민등록번호)	소재지	종류	전세금 (임차보증금)	월세	무상임차 여부	삭제

조회된 내역이 없습니다.

합계

0

0

재산 요건	상기 전세금 포함하여 2018.6.1. 기준으로 신청자와 가구원이 소유한 부동산·자동차·예금 등 재산의 합계액이 2억원 미만	<input checked="" type="radio"/> 예 <input type="radio"/> 아니오
	상기 전세금 포함하여 2018.6.1. 기준으로 신청자와 가구원이 소유한 부동산·자동차·예금 등 재산의 합계액이 1.4억원 이상 (근로장려금 및 자녀장려금 사정액의 50%만 지원합니다.)	<input type="radio"/> 예 <input checked="" type="radio"/> 아니오

전세금(임차보증금) 추가

임차인	최***	본인	가기	이전단계	다음단계	종료하기	
임대인사업자번호 (주민등록번호)	<input type="text"/>			확인			
임대인성명	<input type="text"/>						
소재지	<input type="text"/>			주소검색			
상세주소	건물명 (아파트, 상가) <input type="text"/>			<input type="checkbox"/> 동 (<input type="checkbox"/> 층) <input type="checkbox"/> 호			
종류	주택						
전세금 (임차보증금)	<input type="text"/> 0	월세	<input type="text"/> 0				
무상임차여부	아니오						

닫기

[추가]

근로장려금/자녀장려금 일반신청

인적사항작성>소득명세작성>전세금명세작성>**계좌정보작성**>신청확인및전송

- ① 신청자 명의 계좌 송금 or 우체국 방문 수령 중 선택
- ② 신청자 본인명의 계좌만 신청 가능

계좌정보

수령방법선택	① <input type="radio"/> 신청자 예금계좌 <input type="radio"/> 우체국 방문(현금수령)	
예금주	은행	계좌번호
최***	② -선택- <input type="button" value="▼"/>	

실제 장려금 수급액은 금융자산 확인 등 귀하의 소득·재산에 대한 정확한 심사를 거쳐 결정됩니다.

아래 사유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지급액이 감액될 수 있습니다.

구분	감액 내용
가구원 재산합계액이 1.4억 이상인 경우	해당 장려금의 50% 차감
자녀세액 공제를 받은 경우	자녀장려금 지급액에서 자녀세액 공제 해당세액 차감
체납액이 있는 경우	지급액의 30%를 한도로 체납액에 충당

* 위 내용을 확인하셨습니까?

예 아니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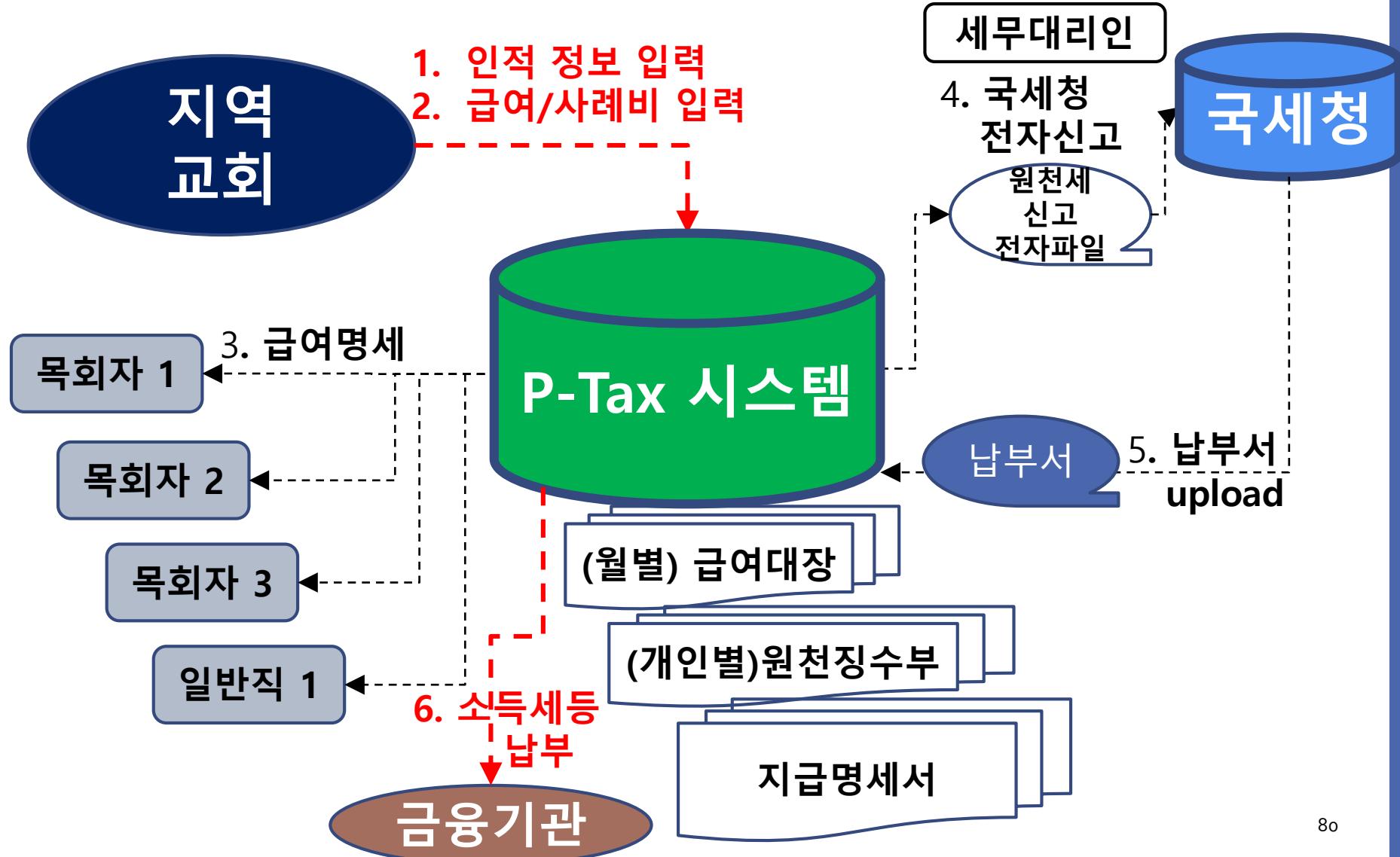
③

메인화면가기

이전단계

신청하기

종료하기



Q & A